

비교법제 연구 09-15-□□-4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남미 -

이 동 원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남미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Central and South America**

연구자 : 이동원(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ee, Dong-Won

2009. 11. 30.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수입국으로서의 의미가 큰 지역으로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남미 지역에 대하여 크게 에너지원별 규제 체계와 투자법제 체계로 분류하여 각 국가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최근 창설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의미를 살펴본 후 석유·가스 등 자원의 현황에 대하여 중남미 전체와 각 개별국가별로 나누어 주요 에너지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에 대하여 고찰하고, 각 에너지원을 광산 부문과 석유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개요를 파악하였으며, 각국의 규제기관과 유관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법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각 국가별 투자 법제에 대하여 법인과 지사의 설립방법,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이나 각 에너지원별 투자금지, 환경 규제, 투자유인 법제 등 공법적 규제를 포함하여 투자 법제 전체를 개관하였고, 다음으로 노동법 체계와 세법 체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국의 부존 자원에 대한 외국의 정부 및 기업의 투자사례에 대하여 에너지원별·국가별로 고찰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개발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자원과 석유자원의 주요 부존국가로서 우리의 단순한 자원수입대상국의 의미를 넘어 투자대상 국가로서 이들 법제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키워드 : 중남미, 에너지 규제, 개발 법제, 투자 법제, 환경 규제, 광업법, 탄화수소법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of development and investment on the countries of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including Brazil, Venezuela, Peru, Chile, and Argentine. These countries have significant meaning to Korea not merely the importing countries but the investment market. This paper classifies the subjects broadly into two parts-that is in energy law and in investment law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reviews the alliance of these countries, what is called UNASUR, and the present state of natural resources of every nation respectively.

The second part of this research reviews the energy policy of each nation and the regulations of natural resources regarding the minerals, hydrocarbons, natural gas, and the biofuels including the biodiesel and bioethanol. And the government bodies and the agencies concerned which control these resources are also been examined.

In the next chapter, the investment legal systems of formal process are introduced respectively including the ways of incorporation, the restrictions on investment regarding the environment, the prohibition on border areas, the merits of investment for foreigners, and the labor law and the tax law. In addition, the examples of investment of foreign governments and companies on these energies are shown in national and energy order.

※ Key Words : Central and South America, Energy Regulation, Development Legal System, Investment Legal System, Protection of Environment, Mining Law, Hydrocarbon Law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I. 연구의 필요성	11
II. 연구의 목적 · 방법 · 범위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	13
제 1 절 남미국가연합	13
I. 창설 배경	13
II.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14
제 2 절 중남미 지역의 석유 · 가스 자원현황	15
I. 석유자원 현황	15
II. 가스자원 현황	16
III. 중남미 지역의 석유가스 생산현황	16
제 3 절 국가별 / 에너지원별 현황	18
I. 브라질	18
II. 베네수엘라	22
III. 페 루	25

IV. 칠레	28
V. 아르헨티나	30
VI. 콜롬비아	34
제 3 장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	39
제 1 절 국가별 에너지 정책	39
I. 브라질	39
II. 베네수엘라	50
III. 페루	53
IV. 칠레	54
V. 아르헨티나	56
VI. 멕시코	62
VII. 콜롬비아	64
제 2 절 에너지원별 법적 규제	65
I. 브라질	65
II. 베네수엘라	75
III. 페루	77
IV. 아르헨티나	81
V. 콜롬비아	89
VI. 파라과이	90
VII. 볼리비아	91
VIII. 우루과이	91
제 3 절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92
I. 브라질	92
II. 베네수엘라	93
III. 페루	97

IV. 칠 레	98
V. 아르헨티나	100
VI. 콜롬비아	102
제 4 장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 법제 및 사례	105
제 1 절 각 국가별 투자 법제 비교	105
I. 브라질	105
II. 베네수엘라	115
III. 페 루	125
IV. 칠 레	133
V. 아르헨티나	142
제 2 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사례	155
I. 브라질	155
II. 베네수엘라	157
III. 페 루	161
IV. 칠 레	163
V. 아르헨티나	166
제 5 장 결 론	169
1. 중남미 에너지 현황에서의 시사점	169
2.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	170
3. 개발 및 투자 법제에서의 시사점	171
4. 기업 투자 사례에서의 시사점	172
참 고 문 헌	17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수입국으로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단순한 자원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 국가로서 당해 지역의 에너지개발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등과 같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자원수입대상국뿐만 아니라, 해외자원투자대상국가로서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개발 법제 및 투자법제의 연구는 국내 에너지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 방법 · 범위

I.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확보 및 투자의 대상인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개발 법제 및 투자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해외자원 개발, 해외자원 투자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이들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 현황, 산업 정책, 법적 규제 체계 및 투자법제들에 대하여 국내외의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인터넷과 법률 D/B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과 인력, 연구의 분량 등을 고려할 때 각 에너지원별·국가별로 망라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각국의 중요도와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과의 관련성, 투자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III. 연구의 범위

첫째, 대상 국가로서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 중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정도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영역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 에너지로서는 석유, 가스, 석탄, 대체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내용적으로는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에너지협력을 위한 협력체계인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하여 개관하고,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산업 정책과 규제기관 및 감독체계를 포함한 규제법제, 그리고 투자법제들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되 구체적인 외국인들의 투자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 2 장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

제 1 절 남미국가연합(UNASUR)

I. 창설 배경

2008년 5월 23일 남미 12개국¹⁾ 정상과 정부대표들이 남미국가연합(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²⁾ 창설에 최종 합의하였다. UNASUR은 기본적으로 남미지역의 위상 강화,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창립의정서(Tratado Constitutivo)의 21개 기본 원칙 중에는 에너지 통신 부문의 통합이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³⁾



[그림 2-1] UNASUR 지역 국가

- 1)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라과이, 우루과이(이상 남미공동시장),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이상 안데스공동체),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 12개국.
- 2)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스페인어 약자.
-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2008. 5. 27, 1~2쪽.

II.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UNASUR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중남미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북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남미 지역은 세계 주요 석유부존지역 중 하나로 2006년 남미의 석유 매장량은 전세계 석유매장량(1조 3174억 배럴)의 7.7%인 1,018억 배럴을 기록하고 있다. 남미는 중동, 아프리카와 함께 석유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세계 주요 석유수출지역이며, 국가별 생산량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남미는 전체 철광석 생산의 22%, 구리 43%, 아연 15%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칠레, 페루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⁴⁾

<표 2-1> UNASUR 회원국의 원유 생산 및 매장 규모

국 가	생산 (1일, 천 배럴)	매장 (10억 배럴)
아르헨티나	696.6	2.468
볼리비아	48.9	0.440
브라질	1,722.7	11.773
칠 레	3.0	0.150
콜롬비아	531.0	1.453
에콰도르	536.0	4.517
페 루	77.6	0.930
수리남	11.6	0.111
베네수엘라	2,510.5	80.012
UNASUR	6,137.9	101.854
전세계(비중)	73,387.1(8.4%)	1,317.447(7.7%)

자료 : PennWell Corporation, Oil & Gas Journal, Vol. 104.47 (2006.12.18)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배경 및 향후 전망, 2008. 5. 27, 5쪽.

제 2 절 중남미 지역의 석유·가스 자원현황

I. 석유자원 현황

2007년말 현재 중남미 지역 전체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총 1,234 억 배럴로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50년 후가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 최대 원유보유국은 베네수엘라이며 2007년말 현재 870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1987년 현재 거의 비슷한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규 유전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여 20년 사이에 확인매장량이 급감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정부의 적극적 신규 유전개발 촉진정책에 따라 새로이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있다.⁵⁾

<표 2-2> 중남미 지역의 원유 확인매장량 현황

(단위 : 십억배럴, %, 년)

국 명	1987	1997	2007	점유율	가채연수
베네수엘라	56.1	74.9	87.0	7.0	91.3
브라질	2.6	7.1	12.6	1.0	18.9
멕시코	54.1	47.8	12.2	1.0	9.6
아르헨티나	2.2	2.6	2.6	0.2	10.2
콜롬비아	1.9	2.6	1.5	0.1	7.4
페 루	0.5	0.8	1.1	0.1	26.4
중남미 전체	122.2	141.2	123.4	10.0	50.1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7. 수정

5)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4~5쪽.

II. 가스자원 현황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자원도 최근의 활발한 탐사 개발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거의 20%에 가까운 확인매장량의 증가를 보여 전세계 천연가스자원 시장에서 4.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약 51년의 가채연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은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이 활발한 신규 가스전 개발에 힘입어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⁶⁾

<표 2-3>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현황

(단위 : tcm, %, 년)

국 명	1987	1997	2007	점유율	가채연수
베네수엘라	2.84	4.12	5.15	2.9	n.a.
아르헨티나	0.69	0.68	0.44	0.2	9.8
멕시코	2.12	1.80	0.37	0.2	8.0
브라질	0.11	0.23	0.36	0.2	32.3
페 루	0.34	0.20	0.36	0.2	n.a.
콜롬비아	0.10	0.20	0.13	0.1	16.2
중남미 전체	6.79	8.01	8.10	4.6	n.a.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7. 수정

III. 중남미 지역의 석유가스 생산현황

중남미 지역의 석유 일일생산량을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이 지역의 원유생산량은 급증하여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48.5%의 증가율을

6)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5~6쪽.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결과 이 지역의 석유생산량은 전세계 석유생산의 12.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7)

<표 2-4> 중남미 지역의 원유 생산량 현황

(단위 : 천b/d, %)

국 명	1987	1997	2007	점유율
멕시코	2,879	3,410	3,477	4.4
베네수엘라	1,910	3,321	2,613	3.4
브라질	589	868	1,833	2.3
아르헨티나	459	877	698	0.4
콜롬비아	388	677	561	0.7
페 루	165	120	114	0.1
중남미 전체	6,807	9,903	10,110	12.9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7. 수정

이 지역의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을 보면, 석유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사이에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였다. 2007년말 현재 이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87년 대비 258.9%의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이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이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6.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8)

7)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7쪽.

8)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4~8쪽.

<표 2-5>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 현황

(단위 : bcm, %)

국 명	1987	1997	2007	점유율
멕시코	26.4	31.7	46.2	1.6
아르헨티나	15.2	27.4	44.8	1.5
베네수엘라	18.6	30.8	28.5	1.0
브라질	3.3	6.0	11.3	0.4
콜롬비아	4.2	5.9	7.7	0.3
페 루	-	-	1.8*	-
중남미 전체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7. 수정

* EIA/DOE, Energy Country Profile-Peru, 2008.

제 3 절 국가별 / 에너지원별 현황

I. 브라질

1. 개 요

브라질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대표적인 부존자원으로는 철광석, 니오븀, 탄탈, 주석, 흑연, 질석, 보크사이트, 활석,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이 있다.

2. 주요에너지의 현황⁹⁾

(1) 철광석

브라질은 매장량 기준 세계 5위,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의 대표적 철광석 부존국가이다. 철광석 매장량은 332억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08. 11, 63~77쪽.

9.8%, 생산량은 3.5억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매장지는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아마존 동부 파라, 중서부 마토 그라소 두 술 등이다.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철의 4각지대(iron Quadrilateral)’에 집중 부존되어 있으며, 이 지대는 Rio Doce Valley 지역과 Paraopeva Valley 지역으로 구분된다. 최대 철광석 광산은 Carajas (전체 10% 생산)이며, Itabira, Mariana, Germano, Casa de Pedra 등 전국에 53개가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광업회사인 VALE¹⁰⁾(본사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1977년 민영화)를 중심으로 36개 철광석 생산회사가 53개 철광석 노천광산과 54개 가공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회사인 캐나다의 Rio Tinto와 호주계 BHP Biliton 등 2개 회사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의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연간 약 3,378 톤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수출량은 1,250만 톤,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주요 원자재인 보크사이트는 호주, 기니, 브라질, 자메이카 4개국이 전체 매장량의 66.7%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3위의 보크사이트 부존국가인 브라질은 세계 매장량의 10.6%인 36억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라주 북부지역은 브라질 전체 보크사이트 매장량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세계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1억 9,435 톤이었으며, 브라질은 이 중 12.7%인 2,4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연마제 등급의 보크사이트를 생산하는 주요 광업회사는 MRN(73%), CBA(11.5%), VALE(7.5%) 등이 있다. 2007년 알루미나 생산량은 689만 톤이며, 주요 생산회사는 Alunorte (52%), Alcoa(20%), CBA(13%) 등이 있다.

10) 종전 이름은 Companhia Vale do Rio Doce(CVRD)이었다.

(3) 망 간

대표적인 철강재 첨가 원료인 망간은 철과 유사한 회색광택을 띠는 금속으로 철, 알루미늄, 동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이며 세계적으로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다. 망간의 세계 매장량은 56.7억 톤이며, 세계 2위의 망간 부존국가인 브라질은 이 중 10.1%인 1억 5,165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망간 광산은 VALE 계열 회사인 Sibra Eletrosiderurgica가 보유하고 있는 파라주의 Carajas 지역에 있는 Azul 광산이다.

세계 2위의 망간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2007년 전세계 생산량의 16.6%인 186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 Azul 광산에서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4) 니 켈

니켈의 세계 매장량은 1억 4,236만 톤이며, 브라질 매장량은 이 중 6.4%인 944만 톤이다. 주요 매장지는 고이아스주의 Americano do Brasil 지역과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Fortaleza de Minas 지역이며, 파라주에서도 많은 양의 니켈 광맥이 매장되어 있다.

2007년 니켈의 세계 생산량은 142만 톤이었으며, 브라질은 이 중 3.6%인 5만 8,317 톤을 생산하였다. 2007년 니켈의 수출규모는 6억 4,133만 달러로 주요 수출시장은 독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미국 등이다.

(5) 니오븀

주로 철강 첨가재로 사용되는 니오븀의 세계 매장량은 420만 톤이며, 이 중 브라질이 세계 매장량의 98%인 413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니오븀 생산회사는 CBMM은 산화 니오븀을 2.5% 함유하고 있는 4억 3천만 톤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의 2007년 니오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3만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CBMM은 브라질 니오븀 수출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AABL은 100% 수출용으로만 니오븀을 생산하고 있다.

(6) 바이오에탄올¹¹⁾

브라질은 2006년 169.9억 ℓ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알콜 생산국가이다. 에탄올 생산은 자율연료 사용 차량(FFV)이 출시된 2004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연적인 혜택에 의해 사탕수수¹²⁾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경작면적 ha당 평균 6,500~8,000 ℓ까지 에탄올 생산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에탄올 수요는 국내 수요 및 수출로 구분되는데, 생산되는 에탄올 169.9억 ℓ 중 135억 ℓ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다. 국내 소비량 중 125억 ℓ는 차량용으로, 나머지 10억 ℓ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다.

(7) 바이오디젤¹³⁾

브라질 에너지청(ANP; Agenci Nacional de Petroleo)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브라질의 1일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4.843m³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약 13.13억 ℓ 수준이다. 바이오디젤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380억 ℓ이었던 것이 2006년 429.8억 ℓ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약 90종의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한 원료 작물이 있는데, 유지함유량, 재배경험 등을 고려할 때 브라질 농업협력청은 오일팜, 아주까리, 해바라기, 유채를 바이오디젤 생산에 적합한 작물로 평가하고 있다.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56~64쪽.

12)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미국은 옥수수를, 유럽은 사탕무를 에탄올 원료 작물로 사용하고 있다.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69~78쪽.

II. 베네수엘라

1. 개 요

BP 2006 통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경우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6위(781억 배럴, 6.6%), 생산량 기준으로도 세계 8위(301만 b/d, 4.0%)의 주요 산유국이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추정 매장량이 196조 ft³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¹⁴⁾ 석탄의 경우에는 약 528 Mms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역청탄으로서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는 현저히 낮아서 중남미 3위의 석탄 수출국이다.¹⁵⁾

또한, 전력발전원별 구성(2005년 기준)을 보면, 수력(74%), 가스(13%), 화석연료(7%), 디젤(5%), 그 밖의 연료(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에너지의 현황¹⁶⁾

(1) 석 유

2008. 4.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말 기준 석유(초중질유 포함) 확인 매장량이 993억 7,700만 배럴,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313만 배럴이라고 관보에 공식 게재하였다(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질유 매장량 합산시 3,2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

BP 통계 등 국제공인 자료에 따르면, 원유 매장량의 70% 이상이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extra-heavy oil)이며, 일일 282만 배럴을 생산하고 264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14)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러시아 1977조, 이란 742조, 카타르 250조, U.A.E. 205, 사우디아라비아 186조, 미국 164조, 알제리 160조, 베네수엘라 150조, 나이지리아 110조, 이라크 110조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35쪽.

15)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46쪽.

16)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17~21쪽.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리노코 초중질유 유전지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외국기업(국영석유회사 포함)과의 합작사업을 통하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리노코 오일 벨트의 초중질유 매장량은 2,6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 4개 유전에서 일일 약 80만 배럴의 성숙 개질 중질유(ungraded heavy crude oil; 일명 synthetic crude oil(합성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지역은 경질유 및 중질유는 Maracaibo, Falcon, Apure, Oriental 지역이고, 중질유 및 초중질유는 Faja del Orinoco(오리노코 벨트) 지역이다.



[그림 2-2] 베네수엘라 부존자원 지역

(2) 가 스

2008. 4. 베네수엘라 정부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170조 8,600억 입방 피트(ft3)로 관보에 공식 게재하였다. 이는 미주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이다.

2007년도 연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은 1조 4,200억 ft³, 일일 평균 생산량은 38억 9,000만 ft³, 총 매장량 중 90% 정도는 원유 생산시 산출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이며, 순수 천연가스인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는 10% 정도로 동부 Anaco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가스 생산량의 34%는 석유 생산용(유전에 재주입 등), 20%는 국내발전용, 12%는 석유 화학제품 생산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3)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52억 톤 정도이며, 알루미늄 생산은 연간 62.4만 톤(2004년 기준)으로 이중 2/3 정도(41.4만 톤)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알루미늄 생산은 연간 62.4만 톤(2004년 기준)으로 이중 2/3 정도(41.4만 톤)는 해외로 수출된다. 베네수엘라 동남부 지역에서 가이아나, 수리남에 이르는 지역은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매장지역이며, 보크사이트 채광 및 알루미늄 제련은 주로 국영광업공사(CVG)를 통해 이루어지며, 베네수엘라 나부 Bolivar 주의 Puerto Ordaz 시는 광물 자원과 풍부한 수력발전 전력을 바탕으로 철, 알루미늄 등 각종 산업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중심지이다. 베네수엘라 국영 광업공사와 일본기업 컨소시엄 간 합작기업인 CVG Venalum은 연간 600만 톤의 보크사이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석 탄

베네수엘라는 연간 840만 톤의 석탄을 생산(2002년 기준)하여 대부분을 중남미 역내 국가 및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콜롬비아와의 접경지대인 Guasare 분지가 주 생산지역이다.

(5) 철광석

베네수엘라는 연간 2,16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여 왔으나, 현 Chavez 정부의 광업 및 산업

정책 상 철광석의 국내 소비가 증가(전체 생산량의 약 70%)함에 따라 수출량은 2004년 931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6) 기타 광물자원

베네수엘라의 석탄 매장량은 5.3억 톤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고, 철광석 매장량은 41억 톤으로 연간 2,16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미 국가 중 제4위이다).

<표 2-6> 기타 광물 매장량 (단위 : 백만 TM(Metric Tons))

광물명	규 토	석회석	구 리	백운석	인산염	망 간	니 켈	아 연	티타늄	텅스텐
매장량	65	1,000	3	100	1,982	2	56	3	15	2

* 자료원 : 베네수엘라 에너지광물부 통계 (2005)

* 우라늄 : 확인 매장량 없음

III. 페 루

1. 개 요

페루는 자원부국으로서 광업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광물가의 상승으로 1차 산업의 대외 수출증가에 따른 지속적 무역흑자 달성 등 장래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석유의 경우 2005년 기준 일일 수요가 15만 6천 배럴이나 일일 생산은 11만 9백 배럴에 불과하여 에콰도르 등 인접 국가에서 부족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15개의 신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석유자원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¹⁷⁾

17)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13쪽.

2. 주요에너지의 현황¹⁸⁾

(1) 석유 및 가스

페루의 확인된 석유가스전 매장량은 원유 약 11억 배럴과 천연가스 11조 4,000 ft³이나 실제 매장량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나 천연가스 대부분이 아마존 정글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미탐사 지역이 많아 개발 잠재력이 크다. 생산량을 보면, 석유의 경우 일일 11만 3천 배럴(2005년 Perupetro), 천연가스의 경우 일일 2.4억 ft³(2005년 Perupetro), 연간 196억 ft³(2003년 미 에너지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140만 ft³(2005년 페루 에너지광업부)이다. 석유 및 가스 매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7> 석유 및 가스 매장 현황(2006년 페루 에너지부)

	석유(bl)	액상천연가스(bl)	천연가스(ft3)
일일생산량('07)	11만 3천	2140만	2.5억
총매장량	63억 2540만	13억 5990만	30.2조
확인매장량	4억 1580만	6억 8150만	11.8조
추정매장량	6억 9200만	2억 9430만	6.8조
가능매장량	53억 1760만	3억 8410만	11.6조

(2) 광업자원

페루의 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과 광물별 생산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2005년 페루 에너지광업부 통계).

18)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14~16쪽.

<표 2-8> 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

광물명	세계 생산량 비율	확인매장량 세계 비율
금	7.1%	8.3%
동	6.7%	6.4%
아연	12.9%	7.3%
은	15.1%	13.3%
주석	15.0%	11.6%

<표 2-9> 광물별 생산 순위

종 류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은(silver)	1	1
아연(Zinc)	3	1
주석(Tin)	3	1
텔루륨(Tellurium)	3	1
납(Lead)	4	1
금(Gold)	5	1
동(Copper)	3	2
창연(Bismuth)	3	2
수연(Molybedenum)	4	2
셀레늄(Selenium)	7	2

IV. 칠 레

1. 개 요

칠레의 경우 광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특히 구리는 세계 제1위의 부존·수출국이며, 몰리브덴의 경우도 제2의 수출품이다. 2007년 칠레의 전체수출 중 광산물이 64%를 차지하였고, 구리 수출은 광산물 수출의 74.1%,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13위), 은(6위), 망간, 아연 등 금속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며, 약 22종의 미금속 광물을 생산하며 그 중 질산염(nitrates), 요드(iodine), 리튬(lithium)은 세계 제1위, 붕산염은 제4위의 생산국이다.¹⁹⁾

2. 주요에너지의 현황²⁰⁾

(1) 구 리

200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557천 톤(세계 1위)이며, 세계 전체 생산량 15,550천 톤의 36%에 해당한다. CODELCO가 칠레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민영 광산 생산분이다. 구리의 국가별 확인매장량 비율을 보면, 칠레 38.4%(3억6천만 톤), 미국 7.5%, 중국 6.7%, 페루 6.4%, 폴란드 5.1%, 호주 4.6%, 멕시코 4.3%, 인도네시아 4.1% 순이다.

(2) 몰리브덴

칠레는 전세계 몰리브덴 매장량의 12.8%를 차지하며, 2007년 생산량은 전세계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칠레 제2의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칠레에서 몰리브덴은 주로 CODELCO 및

19)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칠레 -, 2008. 7, 16~18쪽.

20)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칠레 -, 2008. 7, 17~21쪽.

Pelambres, Collahuasi, Escondida 등 대형 민영광산에서 구리의 부산물로 생산되므로 구리 개발투자와 별도로 취급하기 어렵다.

(3) 원유와 가스

원유와 가스는 마젤란해협 인근에 소량 부존되어 있으나 국내수요의 극히 일부만 충족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요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북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낮다. 원유의 경우, 한때 국내 수요의 15%를 충족시켰으나 2002년에는 약 2%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지역의 일부 수요만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르헨티나로부터 8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칠레 각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의 경우에는 화력(56%)과 수력(44%)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0> 주요 광물 생산·부존 현황 (2007년)

	광 종	생산량	매장량	수출량	세계매장량중 칠레비중(%)	세계매장량중 칠레비중(%)
금 속 광 물	구 리	5,557천톤	360백만톤	5,673천톤	38	36
	몰리 브덴	44,912톤	2.5백만톤	43,621톤	12.8	26.8
	금	40,447kg		25,936kg	1	1.8
	은	1,630,200kg		1,089,334kg	0.5	8.5
	철	8,810천톤		3,200천톤		
	망간	39,500톤				
	납	730톤				
	아연	72,100톤		58,983톤		
리튬	51,100톤	4백만톤	41,125톤	11.7	39	

	광 종	생산량	매장량	수출량	세계매장량중 칠레비중(%)	세계매장량중 칠레비중(%)
비 금 속 광 물	질산염	1,150,000톤			100	100
	요드	16,500톤	18,000백만톤	14,078톤	60	52
	붕산염				4.7	9.0

* 자료 : Compendio de la Minería Chilena (2007)

V. 아르헨티나

1. 개 요

아르헨티나는 국토의 75% 가량이 자원 미탐사 지역으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²¹⁾ 칠레와 볼리비아와 국경이 인접한 4,500km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의 탐사 및 채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맥의 정상지역에는 납·아연·은·주석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고, 산맥의 남쪽에는 붕산염·리튬·칼륨 등이, 그리고 서쪽에는 동과 금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특히, 광산물 중 최근 수년간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동(Copper) 매장량이 칠레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과 몰리브덴 등 특수 광물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2. 주요에너지의 현황²²⁾

(1) 광산업

1993년 광업법 제정 이후 광물자원 개발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4개 외국계 기업만이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종사하였

21) Mining Journal에 의하면, 국별 잠재력 평가에서 중국·페루·필리핀·브라질·칠레에 이어 세계 6위 정도로 보고 있다.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쪽.

2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쪽.

으나 현재는 11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다.²³⁾ 2003년 이후 5년 연속 광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광업 투자는 전년 대비 56.4%, 생산은 67% 증가하였다.

<표 2-11> 연도별 광업 투자 및 생산 동향 (단위 : 백만 불)

	2004	2005	2006	2007	2008
투자금액	623	831	1,300	2,900	8,000
생산금액	1,526	1,887	3,150	3,435	3,900

* 출처 :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

(2) 금속광물별 생산 현황

광업관계기관에 의하면 최근 광산물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광산물 가격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광산물 수출금액은 200억불에 이를 것이며, 이와 관련한 고용창출도 1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12> 금속 광물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광물/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카드뮴	160	153	126	111	124
아연	39,703	37,325	29,839	27,220	30,227
구리	191,667	204,027	199,020	177,143	187,317
리튬(Li2O)	1,588	2,052	2,805	4,225	5,904
망간	0	0	0	0	1,800

23) 캐나다 기업이 전체의 45%, 아르헨티나 기업이 14%, 미국기업이 8%, 영국기업이 6%, 이 외에도 브라질(5%)·스위스(3%)·독일(3%)·칠레(3%)·페루(3%)·멕시코(2%)·남아공(1%) 등도 진출하여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제 2 장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

광물/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금(kg)	30,632	32,506	29,749	28,466	27,904
은(kg)	152,802	125,865	133,917	172,387	263,766
납	12,334	12,011	12,079	9,551	10,683

* 출처 :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

(3) 광물자원 매장지역

아르헨티나의 광물 매장지역은 북서지역(NOA; Noroeste), 북동지역(NEA; Noreste), 중부지역(Centro), 쿠요(Cuyo), 파타고니아(Patagonia)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표 2-13> 광물자원 매장지역 및 주요 매장광물

	주요 지역(州)	면적(km ²)	주요 매장광물
북서 지역	후후이(Jujuy), 살타(Salta), 카타마르카(Catamarca), 투쿠만(Tucuman) 등 4개 주	333,833	금, 동, 은, 납, 아연, 리튬, 봉산염, 점토
북동 지역	산타페(Santa Fe), 차코(Chaco), 코리엔테스(Corrientes), 엔트레리오스(Entre Rios), 포르모사(Formosa), 미시오네스(Misiones) 등 6개 주	501,487	모래, 현무암, 응회암, 이화토, 자수정
중부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 코르도바(Cordoba) 등 3개 주	609,243	점토, 응회암, 화강암, 석고, 대리석
쿠요	라 리오하(La Rioja), 멘도사(Mendoza), 산 후안(San Juan), 산 루이스(San Luis) 등 4개 주	404,906	건축용 모래, 점토, 석회석, 화강암, 석고
파타고니아	추붓(Chubut), 라 팜파(La Pampa), 네우켄(Neuquen), 리오 네그로(Rio Negro), 산타 크루스(Santa Cruz), 티에라 델 푸에고	930,731	금, 은, 석탄, 벤토나이트

	주요 지역(州)	면적 (km ²)	주요 매장광물
	(Tierra del Fuego) 등 6개 주		



[그림 2-3] 주요 광산 위치도

(4) 바이오에탄올²⁴⁾

아르헨티나는 2006년도 기준 총 22개의 제당업체에서 2천만 톤의 사탕수수를 분쇄하여 231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톤당 11ℓ의 에탄올을 생산하여 이중 40%를 수출하고 있다. 옥수수를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85~92쪽.

사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때 1m³당 필요한 옥수수량은 2.5 톤이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 작물로는 사탕수수(Saccharum sp.), 옥수수, 수수(sorghum vulgare), 밀 등이 있다.

(5) 바이오디젤²⁵⁾

아르헨티나 에너지 차관실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100kg의 식물성 기름과 10kg의 메탄올을 사용하여 100kg의 바이오디젤과 10kg의 글리세롤을 생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휘발유 사용량이 경유 사용량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휘발유 사용자의 경우 점차 가스(GNS)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로 바이오에탄올보다는 바이오디젤 분야의 성장이 더 유망하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대두 및 유지 곡물 생산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원료 작물로는 대두, 해바라기, 유채, 잇꽃(Carthamus tinctorius), 그 밖에 자트로(Jatropha)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콜롬비아

1. 개 요

총 면적 114만 km²(남한의 11.6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지닌 콜롬비아는 매장량·광종·순도 면에서 자원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석탄(생산량 기준 중남미 1위·세계 12위), 금(중남미 4위·세계 8위), 페로니켈(세계 2위), 백금, 에메랄드(세계 1위), 석유, 우라늄 등이 있으며, 매장량의 대부분이 태평양 연안·안데스 산계 북서부 고지인 서부·중부·동부산맥을 중심으로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94~101쪽.

분포되어 있다.²⁶⁾

연 번	광 물	주요매장지	분포도
1	석탄	Guajira Cesar	
2	금	Antioquia Bolivar	
3	페로니켈	Cordoba	
4	백금	Choco	
5	에메랄드	Boyaca	

* 자료원 :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2. 주요에너지의 현황²⁷⁾

(1) 석 탄

콜롬비아는 규모 면에서 중남미 1위·세계 12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매장량은 17조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7년 현재 확인 매장량은 7조 톤).

주요 산지로는 크게 북서부 카리브해 연안(Cordoba), 국경 북단 베네수엘라 인접지역(La Guajira), 서부산맥(Valle del Cauca, Antioquia), 동부산맥(Cesar, Norte de Santander, Santander, Cundinamarca, Boyaca)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채굴량 대부분은 발전 및 야금용탄으로

2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콜롬비아 -, 2007. 12, 3쪽.

2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콜롬비아 -, 2007. 12, 8~20쪽.

활용되고 있으며, Norte de Santander, Santander, Cundinamarca 지역의 경우 소량의 무연탄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중장기 광업개발 프로젝트 Vision 2019에 따르면, 현재 7천만 톤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석탄 생산량은 2019년 경 현 수준의 2배에 가까운 1억 3,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

콜롬비아는 세계 8위·중남미 4위의 금 생산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5%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생산량 35.7톤으로 추정). 매장량의 대부분이 서부·중부·동부 산맥 협곡 및 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Antioquia, Bolivar, Caldas, Choco 지역이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금 채굴량은 '91~'98년 간 긴 침체기를 겪었으나, '99년 이후 귀금속 시세 급등에 힘입어 성장동력을 회복하였고, 2004년 이후 생산규모면에서 '9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내 연간 금 생산가능량은 40~46톤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광업에너지부는 Vision 2019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금광 현대화 및 신규 채굴지 확대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40톤 내외의 연간 생산가능량이 2019년까지 231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페로니켈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페로니켈 생산국가로서 그 매장량은 5,16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량의 절대치는 Cordoba주 Montelibano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 연간 생산량은 4만4천~5만4천 톤 내외이다(전량 Cerrada Matoso S.A에 의해 채굴).

(4) 백 금

콜롬비아는 중남미 1위·세계 3위의 백금 생산국이며('02, '03년 기준), 2004년 이후 연간 1톤 내외의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인 생산량은 연간 1톤 내외로 집계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채굴물량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3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 에메랄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는 순도 및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7년 현재 공식통계자료는 없지만 전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산지 및 매장량이 보고타 인근 Boyaca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기록되지 않은 소규모·비공식 채굴규모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물량의 98% 이상이 미국·일본·스위스·홍콩·이태리 등 귀금속 수요지로 수출되고 있다.

제 3 장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

제 1 절 국가별 에너지 정책

I. 브라질

브라질은 철광석, 니오븀, 탄탈, 주석 등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부국이기에 때문에 광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있어서는 자급률 증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 대체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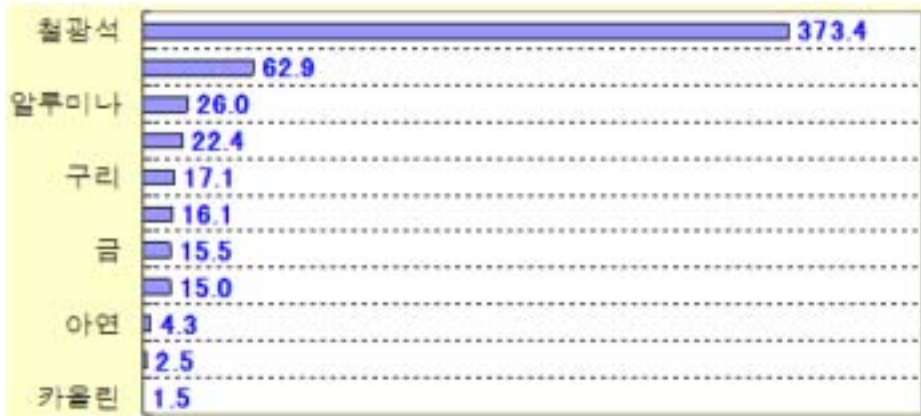
1.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의 확대

(1) 투자의 확대

브라질 광업협회(IBRAM)는 2012년까지 광업부문에 대하여 57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국 및 BRICs 국가의 성장에 견인된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의 수요 급증이 가격을 더욱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총 광산업 투자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의 확장과 신규투자에 걸친 48건의 프로젝트로 철광석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의 65%(370억 달러)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니켈강 채굴에 62억 달러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루미늄(26억 달러), 인산염(22억 4,000만 달러), 구리(17억 1,000만 달러), 보크사이트(16억 1,000만 달러), 금(15억 4,000만 달러) 등의 광물자원의 채굴에서도 대형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²⁸⁾

2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08. 11, 77쪽.

* 자료 : IBRAM(브라질 광업협회)



[그림 3-1] 2008~12년 광업부문 투자규모 전망

(2) 광산의 개발 · 확장

신규 광산의 개발과 기존 광산의 확장은 브라질 전 국토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으로 Minas Gerais주의 Paracatu에서 미국 자본의 Kinross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높아 신규 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량 증가의 가능성 있는 기존의 광산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광산 개발의 경우 브라질 환경부의 특별 허가가 불필요하여 투자 및 개발이 신규광산 개발보다 사업추진이 용이하다.²⁹⁾

나아가 브라질 광물에너지부에서는 1967년 제정된 광산법을 개정하여 외국업체에 국경지대에서 광산 개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³⁰⁾ 다만,

2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08. 11, 63~78쪽.
 30) 현재 시행 중인 광산법에 따르면, 국경지대 치안 유지와 주권 문제 때문에 외국 업체들은 국경지대에서 150km 이내에 위치한 광산은 개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토의 약 13%에 해당하는 약 1,100만 헥타르가 외국업체의 광산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다.

외국업체의 개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광물을 브라질 국내에서 가공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광물생산관리국(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DNPM)이 브라질 광업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나 향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광물 개발세(로열티) 2%를 3%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³¹⁾

(3) 기존 회사들의 인수·합병

광산개발과 관련한 브라질,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브라질 CSN (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이 소유하고 있는 Namisa의 광산은 약 100억 달러의 가치로, Itatiaucu 지역의 MBL 및 Minerita 광산의 경우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니켈 분야에서는 Mirabila Mineracao사가 브라질 북동부 Salvador에서 370km 떨어진 Itagiba 지역에서 2009년까지 3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니켈철의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³²⁾

2. 석유 산업에 대한 개방

브라질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량과 확인 매장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과는 달리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볼리비아의 자원 국유화 정책에 대응하여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 광산법 개정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검토 중”, 2008. 12. 5.

3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지역정보,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08. 11, 63~78~79쪽.

(1) 상류부문의 개방

브라질은 '75년 석유과동 당시 석유산업을 개방하고 광구 개발권을 외국기업에게 허가했다가, '85년 사르네이 대통령 시절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정제, 석유제품 수출입 등 모든 사항을 Petrobras가 독점하게 하고, '91년부터는 외국기업에 광구 분양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석유개발의 저조로 인하여 '94년 까르도주 정부는 개방을 재추진하였고, '95년에는 브라질 의회가 Petrobras의 석유산업 독점을 폐지하면서 '97년에 석유투자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CNPE)와 석유청(ANP)을 설립하고 상류부문(탐사, 개발, 생산)을 전면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ANP는 '98년 7월 이미 Petrobras에 분양된 397개 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까지 외국회사에게 꾸준히 입찰형식으로 개방하고 있다.³³⁾

(2) 하류부문의 개방

더욱이, '03년 룰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하류부문(석유정제, 수송, 판매)에 대해서도 개방하고 있다. '06. 4. 21. '석유자급자족'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중남미 인접국가에서도 석유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Petrobras를 통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 26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개방 및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³⁴⁾

33) '97년 개방된 브라질의 석유 탐사, 개발, 생산에 진출한 외국계 석유회사 수는 '03년 말 현재 약 40여개이고, 국제입찰이 계속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이저급 석유회사들로는 Shell, Chevron-Exxon, Repsol-YPE, Exxonmobil, Elpaso 등이 있다.

3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 2006. 6. 1, 2~3쪽.

3. 천연가스 산업의 진흥

(1) 천연가스 자급자족 정책 추진

'06. 5. 볼리비아의 에너지 산업 국유화 선언 이후, 석유 생산 확대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천연가스 부문에 대하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³⁵⁾ Petrobras는 '06. 5. 18. Santos와 Espirito Santo 광구의 천연가스 개발을 조기 시행하여 천연가스 생산량을 '08년부터 증산하여 '09년까지 자급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³⁶⁾

(2) LNG(액화천연가스) 공장 건설

Petrobras는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앙골라, 카타르, 리니다드 토바고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LNG를 다시 가스화할 목적으로, 2개의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건설 예정지는 동북 지역 및 남동부의 Rio De Janeiro주이다. 다만, 공장 가동시까지는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³⁷⁾

(3) 천연가스 관련법규의 정비

볼리비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투자가 필요하나, 현재는 ANP 대신 Petrobras가 제품가격 결정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투자의 안전성 보증 등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브라질에는 볼리비아의 약 절반인 3천억 m³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나, 투자가 부진하였고 특히 대규모 투자를 위한

35) 브라질이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규모는 '06. 3. 현재 약 21.0백만m³로 브라질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3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 2006. 6. 1, 6쪽.

3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 2006. 6. 1, 6쪽.

수송부문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아울러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구입가격 협상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³⁸⁾

4. 바이오에너지의 개발

브라질 정부는 1975년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o Álcool; Proálcool)을 통하여 에탄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법률 제11,097호에 따라 국가바이오디젤 생산 및 사용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Produção e Uso de Biodiesel; PNPB)을 통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시행 중인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³⁹⁾

<p>브라질알코올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린과 에탄올 혼합 유류 사용 도입 - 가솔린과 무수에탄올 혼합비율 20~25%로 의무화 - 100% 유수에탄올 사용 모터(Otto-cycle) 개발촉진 - 유수에탄올 사용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p>국가바이오디젤 생산 및 사용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07년 혼합비율 2% 허용 - 2008~2012년 혼합비율 2% 의무화 (2006년부터 조기 실시됨) - 2013년 이후 혼합비율 5% 의무화 - 산업용(대규모 농장, 운송회사) 30% 허용

정부는 매년 농업에너지 다개년 정책을 통하여 농업에너지 사용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6~2011년까지의 국가 농업에너지

3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2006. 6. 1, 7~8쪽.

39) USDA Gain Report, Brazil Bio-Fuels Annual-Biodiesel 2007, 2007. 8. 17, p.10.

계획 주요 목표는 석유에너지 사용 감축,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 확대, 그리고 환경보호 및 국제시장의 개척이다.⁴⁰⁾

(1) 바이오에탄올 지원 정책⁴¹⁾

1) 생산 및 활용 촉진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전력대체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Proinfra)

사탕수수 및 목재를 원료로 한 바이오 전력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화가 목적이다(연간 685MW 생산 목표).

② 농업에너지 개발 인센티브법(2000년 법령 제9,991호)

전력분야 발전기업, 송전기업, 배전기업이 각각 순이익의 1%, 2%, 0.5%(2006년부터 0.75%)를 각출하여 농업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도록 한 법이다.

2) 에탄올 시장 개발 및 경쟁력 보장

시장 개발 및 경쟁력 보장 정책으로 ㉠ 유수(함수)에탄올 및 무수에탄올의 생산, 분배, 재판매를 모두 자유화하고, ㉡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을 자유화하며, ㉢ 보조금을 폐지⁴²⁾하는 것이다.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65쪽.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66~67쪽; 에너지경제연구원,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동향, KEEI Issue Paper(No. 13), 2008. 5. 20, 9~11쪽.
42) 1995. 11. 독점 완화(헌법 제9조 개정), 1996. 4. 에탄올 및 가솔린 소비자가격 자율화, 1997. 5. 무수알코올 생산자가격 자유화, 1997. 8. 동 분야 개방을 위한 잠정기간 확정(석유법), 1999. 2. 보조금 삭감 및 유수에탄올 가격 자유화, 1999. 11. 유수에탄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제도 폐지, 2002. 2. 생산 및 상업화 과정 전 분야 가격 자유화.

3) 금융지원

브라질 알코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표 3-1>에서와 같이 ㉠ BNDES Automatico(경작확대, 장비, 새로운 기계구입 등, 한도는 고정투자 자산의 50%), ㉡ BNDES-FINEM(사업금융, 국산장비 구입 등 사업자금 지원, 한도는 고정투자 자산의 50%), ㉢ BNDES-FINAME(장비금융, 국산장비 구입 자금, 기간은 60개월간 최고 1천만 헤알(5백만 달러)까지), ㉣ BNDES-FINAME Agricola(농업금융, 중서부, 북동부, 북부지역 국산장비 구입 등, 기간은 연 7회 또는 분기별 14회), ㉤ 브라질은행의 지역개발금융(연방세의 3%를 북부(1.8%), 북동부(0.6%), 중서부(0.6%) 낙후지역에 지원) 등이 있다.

<표 3-1> 바이오에너지 금융지원

금융종류	프로그램	이자율(%)	재정비용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BNDES Automatico FINAM(사업금융) FINAME(장비금융) FINAME Agricola(농업금융)		-장기이자 -달러화변동 율 -기본 Spread
브라질은행 (Banco do Brasil SA)	FCO (중서부 개발금융)	연 6~14	
북동부은행 (Banco do Nordeste Brasil SA)	FNE (북동부 개발금융)	연 6~14	
아마존은행 (Banco da Amazonia SA)	FNO	연 6~14	

(2) 바이오디젤 지원 정책⁴³⁾

브라질 정부는 1980년 이래 바이오디젤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브라질 석유공사와 공군부는 항공기에 바이오케로젠 사용을 위해 디젤프로그램(PRODIESEL)을 발표하였고, 본격적인 도입은 2004년 바이오디젤 생산 및 사용 프로그램과 2005년 1월 B2/B5 혼용을 의무화한 법령 제11,097호로 시작되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i) 바이오디젤 도입 및 기간 설정, ii) 바이오디젤 생산 및 사용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부처간 집행위원회(CEIB) 설립, iii) B2 혼용 촉진을 위해 브라질 석유청(Agenci Nacional de Petroleo; ANP)은 바이오디젤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혼용은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정유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세제 지원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다음 <표 3-2>에서와 같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표 3-3>에서와 같이 원료나 생산자의 규모, 생산지역에 따라 연방세의 면제여부와 공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⁴⁴⁾ 다만,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가족규모 농경인 및(또는) 바이오디젤 생산자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두오일(soy oil)의 경우, 중서부 및 그 밖의 지역에서는 풍부한 원료와 산업능력 때문에 쉽게 대량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43) 에너지경제연구원,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동향, KEEI Issue Paper(No. 13), 2008. 5. 20, 16~18쪽.

44) 2005. 5. 18. 법령 제11116호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자에 대하여 PIS(사회통합세), PASEP(공공근로자자산형성공여세), COFINS(사회복지재정기여금) 등의 감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료구입 방법에 따라 차등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5) USDA Gain Report, Brazil Bio-Fuels Annual-Biodiesel 2007, 2007. 8. 17, 11쪽.

<표 3-2> 세제상 인센티브

CIDE (경제지원세)	연료세를 통해서 모금된 자금으로 인프라사업 및 교통시스템 유지에 지원. 일반 디젤에 R\$ 0.07/liter 부과
PIS/COFINS (사회복지세)	디젤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며, R\$ 0.148/liter의 고정된 세액으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자에게 부과
IPI (공업제품세)	모든 제조/가공 상품에 대하여 부과

<표 3-3>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단위: R\$/liter)

세금공제	바이오디젤				일반디젤
	북부, 동북부 지역의 영세농 (w/castor, palm)	영세농	북부, 동북부 지역의 중대형농 (w/castor, palm)	나머지	
IPI	완전면제	완전면제	완전면제	완전면제	완전면제
CIDE	완전면제	완전면제	완전면제	완전면제	0.07
PIS/COFINS	100%할인 (R\$0.000)	68%할인 (R\$0.070)	32%할인 (R\$0.151)	0.218	0.148
연방세 총계	100%할인 (R\$0.000)	68%할인 (R\$0.070)	32%할인 (R\$0.151)	0.218	0.218
ICMS(state)	12%	12%	12%	12%	12%~17%

자료 : Government of Brazil, Executive Orders # 5,297/04, 5,297/04 and 5,457/05, CONFAZ #113 and 160 (2006)

그런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에너지 인증서(Selo de Combustivel Social)⁴⁶)를 취득해야 하며,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업자가 국가소농활성화프로그램(PRONAF)에 참여하는 가족규모 소농(小農)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해야 한다.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농촌 경제 개발을 위한 농촌 금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2) 재정 지원 등

① 벽지에너지개발지원 프로그램(2004년 법령 제10,848호)

브라질은 북부 등 벽지의 전력 수급을 위한 화력생산에 석유 및 석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i) 화력생산을 위한 고가의 에너지 소비비용(custo do consumo do combustivel; CCC)을 타지역 소비자들이 분할 지불하도록 하고, ii) 벽지의 화력발전이 디젤유 대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며, iii) 화력생산에 사용된 바이오디젤 사용비용도 에너지 소비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바이오디젤투자 재정지원 프로그램

원료작물 재배에서부터 최종 상품 판매에 적용되며, 바이오디젤, 식용유지 생산 장비 및 도구, 바이오디젤 부산물 공정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③ 바이오디젤 공매규칙 시행령 제483호

브라질 석유청(ANP)은 공매에 사회에너지 인증서를 보유한 바이오디젤 생산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량은 국내 디젤 보유량에 따라 석유청이 결정한다.

46) 2005. 5. 13. 발표한 것으로, 농촌분야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일환으로 소농이 농업생산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 산유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OPEC 내 3번째 석유수출국이며,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를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은 주요 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석유개발 투자, 역내 통합, OPEC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에너지 시장 다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주요 자원 및 산업의 국유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2000년부터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주요산업에 대한 진정한 자원 국유화(auténtica nacionalización)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류부문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명기한 신헌법과 새로운 탄화수소법(Hydrocarbon Law)을 공포하여 기존의 에너지개발 사업들이 PDVSA와의 합작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화조치로 인해 국제사회는 매년 25% 감소하는 석유 및 가스생산 유지를 위한 베네수엘라의 금융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유권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스산업에 대하여 외국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 원유 및 광물

'06. 3. 31. 차베스 정부는 국가주권(soberanía nacional)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의 국가 소유권을 재확인하면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 모든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하여 기존 국내외 모든 기업과 맺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를 통해 지분을 임대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기업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불허하였다. 과거 민간기업은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광물의 경우 과이아나개발공사(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 CVG)와 개별적 계약을 통하여 석유, 에너지 및 광물을 획득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06. 4. 1.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지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검토하고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⁴⁷⁾

(2) 주요 통신, 전력

차베스 정부는 2007년 1월 주요도시의 전력공급업체인 EDC를 시작으로 전략산업분야의 국유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⁴⁸⁾

2. 석유개발 투자

전략적 국가 석유개발계획(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을 통하여 2005~2012년간 1단계 기간 중 총 \$560억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70%는 정부, 30%는 민간). 이 계획은 원유매장량 추가 확인,⁴⁹⁾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산업 개발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47) 베네수엘라의 국유화, 로열티 인상(1%에서 33%), 소득세 인상 조치 등에 대하여 이전에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던 24개 기업 대부분은 이를 수용하였다(Exxon Mobil 등 3개 업체가 반발하였으나, 프랑스 토탈사와 이태리 ENI사는 수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29984>.

48)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20쪽.

49)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리노코 초중질유(Extra Heavy Crude Oil)를 포함한 원유확인 매장량을 3,200억 배럴까지 높여 세계 제1위(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2,640배럴)의 원유보유국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6쪽.

50) 상기 1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PDVSA는 현재 원유생산량 330만 b/d(PDVSA 직접생산 200만 b/d)를 580만 b/d까지 증대시키고, 자국 내 정제능력도 현 130만 b/d에서 230만 b/d로 증가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20쪽.

3. 역내 통합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의 역내 통합기구인 ALBA,⁵¹⁾ Petrosur(남미 석유통합체), Petrocaribe(카리브 석유통합체) 등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남미 통합을 위한 Petroamerica를 구상하고 있다. 이들 카리브지역 및 중남미국가 등 협력대상국들에 대하여 가격감면, 금융지원, 원유와 농업제품교환, 기술지원과 의료지원 등의 특혜성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에너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4. OPEC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베네수엘라는 OPEC 창설 이래 주요 회원국으로서, 석유 및 에너지자원 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OPEC 회원국들과의 정책 협력 및 연대 강화를 통하여 국제석유시장에서의 OPEC의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인 석유수급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 OPEC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⁵²⁾

5. 에너지 시장 다변화

베네수엘라는 미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석유 수출의존도 및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남미국가⁵³⁾ 및 아시아국가⁵⁴⁾를 대상으로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⁵⁵⁾

51) Alternative Bolivariana para la America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무역대안.

52)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16쪽, 21쪽;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5~6쪽.

53) 브라질의 경우 경제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에너지 지역통합 강화라는 베네수엘라 대외정책과 맞물려 자원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54) 중국·인도의 경우 신흥 에너지 소비대국으로서 자원협력 중점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일본의 경우 전통적 에너지 소비대국으로서 대 베네수엘라 투자유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대상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은 PDVSA의 아시아시장 투자 교두보로서 차별화된 접근을 구사하고 있다.

55)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5쪽.

Ⅲ. 페 루

페루는 가스 소비의 장려와 에너지 소비비율 균등화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의 석유 에너지 대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광산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자원개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 천연가스에 의한 에너지 대체 추진

(1) 가스 소비 장려

페루 정부는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 및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산업용, 발전용 등으로 국내 가스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연료를 가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개조 및 천연가스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misea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이러한 가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주 국가에 대한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2) 에너지 소비비율 균등화

2011년까지 현재의 에너지 소비를 석유(56% 33%), LNG(17% 34%), 대체에너지(27% 33%)로 1/3씩 균등하게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⁵⁶⁾

2. 바이오연료 활용 추진

페루는 아직까지 바이오연료 생산 실적은 없으나, 대기오염 완화 및 에너지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 2003년과 2005년 바이오연료 사용을 추진

56)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3쪽.

하는 법령 제정 및 상용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6. 2. 국립 La Molina 농업대학 내에 소규모 바이오디젤 시범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⁵⁷⁾

3. 자원개발 관련 정책

Fujimori 정부(1990~2000) 하에 광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방침으로 자원개발 정책 및 법규를 정비하였고, 이후 환경법 강화 및 광산정보 축적 등을 통한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업활동의 효율적인 질서와 통제를 위한 명료성, 일관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i) 국영 광업기업의 민영화 추진, ii) 설비 가동률 극대화 및 신규투자 장려, iii) 광물자원에 대한 부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 확대, iv) 광업관련 지질학, 광물학, 금속학 등 연구개발 활동 촉진 등이 있다. 다만, 광산지역 주민과의 갈등, 정부의 로열티·증세 등의 문제가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⁵⁸⁾

IV. 칠 레

칠레는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지만, 탄화수소 자원이 부족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국의 전력수요를 주로 수력발전에 의존했으나, 수요증가와 환경문제로 인하여 천연가스 사용 비중을 늘려왔다. 1996년부터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비중은 8%에서 2005년 43%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4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칠레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자,

57)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4쪽;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 10, 46쪽.

58)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4~5쪽.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1.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다변화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송관을 연결하여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비효율성, 환경문제, 개별국가의 이익 상충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칠레는 Quintero 지역에 LNG 수입 및 재가스화 공정을 갖춘 터미널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수입,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밖에도 석탄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 및 수력발전의 용량을 늘리는 등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⁵⁹⁾

* 자료 Economist



[그림 3-2] 대륙 종단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

59) 양행민, “칠레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06. 5, 32~47쪽 참조.

2.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칠레 정부가 입안하여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행될 예정인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Energía Renovable) 개발계획법안에 의하면, i) 칠레 내의 발전회사들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매년 발전에너지 총량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ii) 대체에너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발전회사에 대하여는 1MW/h 생산당 0.4 UTM(25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법안이 발효되는 2010년부터 칠레는 120,000헥타르의 경지에서 바이오디젤, 에탄올 등을 생산하여 칠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정유수입 물량 전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⁶⁰⁾

V.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량과 가채 매장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볼리비아의 에너지 국유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물량 확보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체수단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투자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와 이에 대한 개발 및 지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60)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 10, 62쪽.

1. 천연가스의 확보 노력

(1)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의 감소

아르헨티나의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은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유전을 대체할 신규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후 유전이 대부분이어서 채굴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⁶¹⁾

(2)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의 감소

2006. 1. 현재 아르헨티나는 18.9조 ft³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지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아르헨티나는 그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왔지만, 동시에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천연가스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주된 에너지이다. 그러나 투자의 부진으로 인하여 2005년의 천연가스 생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 등 그 매장량 및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투자 부진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국내가격에 대한 통제에 의한 생산기업들의 수익 악화에 기인하며,⁶²⁾ 더불어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규 가스전에 대한 탐사와 시추 활동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⁶³⁾

(3) 볼리비아와 수입 협상과 투자 확대

아르헨티나는 2004년 천연가스 부족으로 발생한 에너지 파동으로 인하여 칠레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시키고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61) 수은해외경제, “에너지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시급해”, 2006. 10, 59~60쪽.

62) 2004년 발생했던 에너지 파동의 원인은 2003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수은해외경제, “에너지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시급해”, 2006. 10, 58쪽.

63) 수은해외경제, “에너지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시급해”, 2006. 10, 60~61쪽.

한편,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각종 긴급조치 및 법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향후 비슷한 에너지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에너지 국영기업인 Enarsa의 설립 및 하류부문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유인 제공,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자율화하려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에너지기업들도 신규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르헨티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의 46%, 44%를 차지하는 스페인의 Repsol-YPF, 브라질의 국영석유사인 Petrobras, 이외에 Total, Chevron, Pan American Energy, Wintershall Energia 등도 생산증대 및 신규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⁶⁴⁾

2.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에 원자력 발전부문에 3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난 수십 년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Atucha II 원자력발전소의 완공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아르헨티나 전력생산의 7%에 불과하며,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력 및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와 공유하고 있는 야시레따(Yacyreta) 댐의 전력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⁶⁵⁾

3.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아르헨티나는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 작물로는 사탕수수, 옥수수, 수수,

64) 수은해외경제, “에너지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시급해”, 2006. 10, 62쪽.

65) 수은해외경제, “에너지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시급해”, 2006. 10, 62쪽;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 2006. 6. 1, 19~20쪽.

밀 등이 있고, 바이오디젤의 원료 작물로는 대두, 해바라기, 유채, 잇꽃, 그 밖에 자트로파(Jatropha)나 바다해조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1) 바이오에탄올 지원 정책⁶⁶⁾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0년대 고유가 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4년 상원, 연방연구위원회, 에너지부에 속한 연료-휘발유-알코올 위원회 등 각 부처 간 정보 상호 교환제를 실시하였다. 1940년대 후반부터 이 분야의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79년도에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바이오에탄올 프로그램 “알코나프타(Alconafta)”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⁶⁷⁾

<표 3-4> 아르헨티나의 바이오에탄올 프로그램 Alconafta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 3. 15.부터 Tucumán주에서는 휘발유에 12%의 에탄올을 혼합시킨 Alconafta를 판매하기 시작 - 1차적으로 설탕 생산을 위한 당밀 초와 공급분을 생산에 이용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도에 북서부지역(NOA)에서 Alconafta 사용을 의무화함 - 기존 증류설비를 100% 에탄올 생산에 활용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북동부지역에서 Alconafta 사용을 의무화함 - 기존 분쇄시설을 100%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함 - 설탕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Alconafta 생산에 사용할 새로운 연료 개발에 중점을 둠 - Alconafta 프로그램을 시행한 12개 주에서 1987년 소비한 무수 알코올 양은 연간 2억 5천만 ℓ이며, 혼합용에 사용된 에탄올 (총 생산량의 15%)에 한해 연료세가 면제됨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4억 1천만 ℓ의 에탄올 생산을 위해 분쇄, 증류, 건조 시설 확장투자, 원료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됨 (사탕수수 생산 부진, 국제 설탕가격 회복세, 석유회사들의 압력)

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92~93쪽.

67) 프로그램의 목적은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정책의 시초이다.

비록 Alconafta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으나,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판매 및 유통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바이오디젤 지원 정책⁶⁸⁾

1) 경제부 농축수산물식품 차관실 바이오연료 프로그램

2004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끼고 경제부 농축수산물식품차관실 산하 바이오연료 특별 부서를 설립하고 지침 1156/2004를 통해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⁶⁹⁾

① 프로그램의 주요목표

-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함.
- 농촌분야와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제조 플랜트의 가동을 지원/자문.
- 바이오연료 연구·보급 기관, 기구, 공익단체 등을 지원함.
-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민간·공공투자를 장려함.

② 기간별 프로그램

- 단기적으로 유채꽃 잇꽃 실험 재배를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은 바이오디젤 생산용 기름을 얻기 위한 계획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한 계획임.

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102~104쪽.

69)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정책차관실령 1076/2001(Resolución)을 통해 국립 바이오연료 프로그램을 확립했으며, 2001. 11. 5. 대통령령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바이오디젤의 경우 연료 양도세를 10년간 면제해주며 가중감가상각을 허용하여 재산세 감소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③ 구체적 활동 계획

- 유채재배의 보급, 생산자들의 체험과 관련된 통계조사 및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둠.
- Misines주의 농공업진흥연구소와 Picada Libertad 협동조합과 민간 회사들 사이에는 파마자(Ricinus communis) 보급을 위한 협약이 있음.
- 장기적으로 국내 원격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일반 식물 품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협력협정 및 협약(국립농축산기술연구소, 대학교, 정부기구, 민간기구 등)의 틀 안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해 반응을 분석함.
- 그 외에도 이를 바이오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생산규모로 재배 가능한지 여부도 분석할 계획임.

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2006. 5. 12. 공포)⁷⁰⁾

이 법의 주목적은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식물성 에너지 생산과 이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장려기간은 법 승인 시부터 15년이다.

B5 및 E5 사용 의무 시기는 이 법 제정 후 4년이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되지만, 집행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바이오연료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바이오디젤 5%를 의무적으로 경유와 혼합해야 하므로 이때 필요한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6억 8,500만(60만톤)ℓ로 추산된다.

70) 시행령(109/2007)은 2007. 3. 승인.

3) 품질 규격

현재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품질 규격은 2001. 8. 제정된 IRAM 6515 법규를 따르고 있으나, 이 규정은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바이오디젤, 즉 B100을 고려한 규정으로 에너지 차관실은 향후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차관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디젤 품질 법규 모델은 유럽의 EN 14214이지만, 자급자족하는 소농에게는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농축업계의 자체 에너지 충당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VI. 멕시코

1. 에너지개혁법⁷¹⁾

(1) 추진 배경 및 경과

갈데론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 개혁안이 2008. 10. 23. 멕시코 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멕시코 석유 생산량의 감소와 유가 급락 등의 위기요인들로 인하여 개혁안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영석유공사(Petróleos Mexicanos; PEMEX)의 원유 생산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멕시코 최대 유전인 Cantarell의 경우 2008년 원유 일일생산량이 전년대비 30만 배럴 감소한 310만 배럴로 줄어들었고, 2009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등 멕시코 석유산업이 쇠퇴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²⁾ 이는 PEMEX의

71)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멕시코 에너지 개혁법안, 2008년 중 의회통과 가능성 높아”, 2008. 1. 18;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멕시코 에너지개혁안 의회 통과 배경 및 전망”, 2008. 11. 11.

72) 2008. 3.부터 9개월 동안 판매 수입 634억 달러의 99.2%가 정부 재정자금으로 투입되었다.

원유판매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 재정에 투입되면서 최근 10년 동안 유전개발 및 정유설비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 에너지 개혁법의 주요 내용

1) 민간투자 유치

심해 유전 개발에 한하여 탐사, 개발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운영권 한을 민간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⁷³⁾ 생산된 원유 및 가스의 판매, 정유설비는 PEMEX가 소유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개발 및 운영과 제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 PEMEX 자율경영 강화

PEMEX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 PEMEX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서 임명하는 PEMEX 이사회 자문위원을 신설하고, ㉡ PEMEX의 유전개발, 정유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계약추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다만, 정유시설, 송유관 건설과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불허), ㉢ PEMEX 자체적으로 예산 및 유전개발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정확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3) 관련 조직 신설

원유생산 확대를 위한 유전개발 승인과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위하여 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를 신설하고, 정부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감독을 위하여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nergía)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73) 멕시코 헌법 제27조는 원유 개발 및 판매 등에서 오직 국가만이 소유권을 갖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바이오에너지 이용의 활성화

현재 멕시코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시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바이오연료 보급능력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계획(NEP 2007-2012)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멕시코 의회는 2007. 4. 26. 바이오연료개발촉진법(Biofuels Promotion and Development Law; LPBD)을 승인하였다.

바이오연료개발촉진법은 i)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ii) 깨끗하고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iii)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3가지 목적으로 2005년에 초안이 완성되었다.⁷⁴⁾

VII. 콜롬비아

현재 콜롬비아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브라질 다음으로 완비되어 있으며, 콜롬비아의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에는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과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⁷⁵⁾

(1) 바이오에탄올 기본법

가솔린과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 지역별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급, 농축산 생산, 고용창출 등 부문별 정책에서 바이오에탄올 사용 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바이오디젤 기본법

콜롬비아에서 사용되는 디젤에 바이오디젤 함유를 의무화하고 있고, 품질기준은 광업에너지부와 환경토지이용계획부가 설정하도록 하고

74)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 10, 40쪽.

75)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 10, 54쪽.

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B5)로 의무화 하며, 2010년부터 콜롬비아 도시교통시스템에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3) 세제상 인센티브

연진연료용 가솔린과 혼합되는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엔진연료용 가솔린과 혼합되는 바이오에탄올의 혼합비율 만큼 일반세금 및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 바이오디젤이 화석연료와 혼합될 경우 판매세와 일반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하여 법률 제939호 제1조와 제2조는 바이오디젤 생산 장려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에너지원별 법적 규제

I. 브라질

1. 광산 관련법⁷⁶⁾

(1) 개 요

브라질 광산과 관련된 모든 연구 조사 및 개발 사업은 1967년 제정된 광산법(Código de Mineração), 1988년 제정된 연방헌법 등에 따른다. 그 밖에 에너지자원부(Ministerio de Minas e Energia)·국가광물생산관리국(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DNPM) 등 광산 개발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제정한 규정이 있다. 광산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 영토에 매장되어 있는 광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지하자원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29~37쪽 참조.

- 브라질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자원개발과 이에 따르는 수익·금전적 보상 등은 연방·주·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광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는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연방·주·시 정부는 개발업체의 공식등록을 의무화함은 물론 주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인디언 주거지역의 광산개발 및 자원연구에 관한 허가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공청회를 열어 광산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물생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국경 인근지역의 광산개발의 경우 반드시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주 정부는 환경보호 및 광부들의 경제·사회적 개발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광산개발을 허락한다.
- 광산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협동조합(Cooperitiva)의 형태로 광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광산개발 허가 취득에 유리하다.
-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조사활동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브라질 기업(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지역이 국경 지대이거나 인디언 거주지역일 경우에는 정부의 특별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광산자원 조사는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만 활동이 가능하며, 브라질 정부로부터 취득한 조사허가권을 허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산개발 업체는 법이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2) 광산개발 사업절차

1) 조사허가서(Alvara de Pesquisa)

조사허가서란 국가광산개발원(DNPM) 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광산개발 허가서로서 브라질에서 광산개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들이 취득하여야 한다.

광산법 9314/96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광산조사 활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조사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DNPM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70 UFIR⁷⁷⁾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사서류는 DNPM 및 광산개발지역 관할관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광산개발 전문가가 사전 검토한 상세한 조사계획서, 기술적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ART-CREA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관할관청은 희망지역에서의 조사활동 가능여부, 조사활동 적법여부 등 구비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활동을 허락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DNPM에게 조사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DNPM은 최종적으로 광산조사 활동을 허가하며, 허가사실은 관보(DOU: Diário Oficial da União)를 통하여 공식 발표된다.

서류상 미비한 점 또는 위법여부가 발견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업체에게 서류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신청서류는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조사활동을 희망하는 업체는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77) 세금납부를 위하여 정부가 만든 화폐단위로 물가에 따라 변동된다. 2007년 11월 기준 1UFIR은 1.74헤알이다.

조사허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조사를 허가받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조사업체는 매년 토지 1 ha 당 1 UFIR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조사업체는 법으로 명시한 기한 내에 조사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사 중 발견된 광물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DNPM은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1년 이내에 광산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허락된 기간 동안 조사활동을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3년(아마존 지역의 경우)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광산개발 허가(Concessão de Lavra)

광산개발 허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광산개발계획서(Plano de Aproveitamento Economico da Jazida; PAE) 및 개발업체의 재무상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DNPM에 신청한다.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DNPM은 에너지 자원부(MME)에 허가를 요청하며, 이후 MME가 최종적으로 관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광산개발 허가를 발표한다.

3) 설비·영업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Licença de Funcionamento)

MME의 최종허가를 얻기 위하여 설비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 LI)·영업허가(Licença de Operação(LO)/Licença de Funcionamento(LF))·환경허가(EIA/RIMA)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광구사용권 인정(Imissao de Posse de Jazida)

광산개발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산개발 업체는 DNPM에 광구사용권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광구사용권 인정식은 광산개발 현장에서 개발업체, 토지소유주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광산업자는 개발허가 공식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연간 개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업체는 광산소재지 시정부 및 주정부에게 매년 광산개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은 광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별도로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여야 한다.

5) 개발사업 중단

DNPM의 동의 하에 최대 6개월까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중단이 반복될 경우 정부는 개발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

(3) 광산법(Código de Mineração)

모든 광산개발 활동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APÍTULO I Das Disposições Preliminares (광산개발사업의 정의)

모든 광산자원의 개발·생산·유통은 국가가 관장한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산분야 활동은 다음과 같다(Art 2º).

- I. 에너지자원부 허가가 필요한 광산개발 사업
- II. 국가 광물생산국(DNPM) 국장의 허가가 필요한 광산개발 사업
- III. DNPM 등록 및 개발지역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
- IV. DNPM 국장 허가가 필요한 채굴 작업
- V.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독점개발 사업

CAPÍTULO II Da Pesquisa Mineral (광산자원 조사활동 및 허가기관)

광산업체는 개발을 희망하는 광물에 관한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진행될 예정인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광산자원 조사는 지질학 전문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허가는 DNPM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CAPÍTULO III Da Lavra (광산개발 관련규정)

광물의 채굴작업, 가공작업 등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관리·통제하는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굴작업 시작 이전에 개발업체는 광산에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먼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DNPM과 에너지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CAPÍTULO IV Das Servidões (인력 고용)

자원조사 또는 채굴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노동인력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또는 채굴 작업 시작 이전에 토지사용료 등을 비롯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CAPÍTULO V Das Sanções e Nulidades (규제 및 계약 무효)

조사 및 채굴 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1) 경고, 2) 과태료 부과, 3) 허가 취소 등으로 차등을 두어 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

CAPÍTULO VI Da Garimpagem, Faiscação e Cata (금지명령)

정부의 지시에 따라 채굴 일부를 폐쇄하거나, 일부광물 발굴을 금지시킬 수 있다.

CAPÍTULO VII Das Disposições Finais (광산업체 등록 및 관리)

광산조사 또는 개발허가를 신청한 업체, 이미 허가를 취득한 업체 모두는 회사설립 정관 및 지분구조, 변경내용 등을 DNPM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나 벌금 조치가 취해진다.

2. 석유 관련법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법률 제11921호(2009. 4. 13), 제11909호(2009. 3. 4), 제11116호(2005. 5. 18), 제11097호(2005. 1. 13), 제10871호(2004. 5. 20), 제10636호(2002. 12. 30), 제10453호(2002. 5. 13), 제10336호(2001. 12. 19), 제10312호(2001. 11. 27), 제10274호(2001. 9. 10), 제9956호(2000. 1. 12) 등이 있다.⁷⁸⁾

(1) 석유산업법

에서는 석유 및 가스 독점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과 활동,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Energética; CNPE) 및 국가석유청(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ANP)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⁷⁹⁾

제1장에서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익의 유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촉진, 소비자 이익의 보호, 환경보호 및 에너지의 보존 증진,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1조).

제2장에서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장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독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용어의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s)를 내리고 있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78) Brazil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8, pp.124~131.

79) 법률 제9478호(1997. 8. 6)

제4장에서는 국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청을 설치⁸⁰⁾하면서 그 역할, 수입과 자산, 의사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부터 제20조까지).

제5장에서는 탐사와 생산에 관하여 일반규정, 활동에 대한 특별 규제, 입찰, 계약 양허권 및 로열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부터 제52조까지).

제6장에서는 석유 정제 및 천연가스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7장에서는 석유, 석유생산물 및 천연가스의 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8장에서는 석유, 석유생산물 및 천연가스의 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9장에서는 페트로브라스(Petrbras Brasileiro S.A.)가 에너지광산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의 지분 의무비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장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2) 바이오에너지법

에탄올 생산 1위를 기록하는 브라질은 이미 1970년대부터 바이오연료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에탄올뿐만이 아니라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관련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설탕·알코올 부처간위원회(CIMA) 설치⁸¹⁾

CIMA는 설탕·알코올 업계의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에너지원 중 사탕수수제품의 적정 비중과 동 분야의 자급(self sustenance)과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경제적

80) 법률 제11097호(2005. 1. 13)

81) 시행령 제3546-2000호(2000. 7. 17)

메커니즘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CIMA는 생산 관련 프로그램과 연료용 에틸알코올 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2)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입업자 등록⁸²⁾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입업자가 재무부 연방세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이오디젤 생산·수입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석유청(ANP)의 승인이 필요함. 2002. 5. 10 제정된 법 제10451호와 2005. 1. 13 제정된 법 제11097호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3) 브라질 에너지원에 바이오디젤 도입⁸³⁾

브라질 에너지원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도입을 규정하고, 기름연료(석유디젤)에 대한 첨가비율을 정한다. 종합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상업화, 그리고 석유청(ANP)이 시행하는 감독·통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4) 자동차 오염가스배출의 감축과 다른 대응책에 대해 규정⁸⁴⁾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 산화질소와 다른 오염 물질의 수준을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동차생산업자와 연료생산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배출상한선과 목표달성기한을 정하고, 국토 전역에서 가솔린에 무수알코올을 첨가하도록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5) 가솔린에 무수알코올 의무적 첨가 선언⁸⁵⁾

동 의무는 가솔린 생산업자에 해당하며, 가솔린의 생산 방법 또는 과정에 관계없이 국산 무수알코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2) 법률 제11116호(2005. 5. 18)

83) 법률 제11097호(2005. 1. 13) □□□□ 법률 제9478호, 제9847호, 제10636호를 개정.

84) 법률 제8723호(1993. 10. 28)

85) 법률 제737-1938호(1938. 9. 23)

6) 바이오디젤 첨가 및 상업화 규정⁸⁶⁾

첨부되는 기술규정에 의거, 디젤유에 바이오디젤을 2% 첨가할 수 있으며, 허가된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에 의해 국토 전역에서 상업화될 수 있다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7) 무수에틸알코올과 함수에틸알코올 세부사항 규정⁸⁷⁾

ANP 기술규정 제07-2005호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에 의해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수에틸알코올과 함수에틸알코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8) 석유디젤 상업화 규정⁸⁸⁾

국토 전역에서 석유디젤과 석유디젤-바이오디젤(B2) 혼합연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경제 행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9) 바이오디젤 도입 규정⁸⁹⁾

브라질 에너지원에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규정한 법과 시행규칙으로서, 디젤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2%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 또한 디젤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양이 2% 이상이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⁹⁰⁾

86) ANP 시행지침 제42-2004호, ANP 기술규정 제4-2004호(2004. 12. 9)

87) ANP 시행지침 제36-2005호, ANP 기술규정 제07-2005호(2005. 12. 7)

88) ANP 시행지침 제310-2001호, ANP 기술규정 제06-2001호(2001. 12. 28)

89) 법률 제11097호(2005. 1. 13) 제2조1문(시행령 제5448호, 2005. 5. 20)

90)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7~9쪽.

II. 베네수엘라

1. 광업 관련법

(1) 광업법(Ley de Minas)

광물자원의 탐사·생산·양허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 법으로 1999년 Hugo Chavez Fria 대통령령(Decreto) 제295호이며, 2001년 대통령령 제1234호로 행정절차·조건 등이 수정·보완되었다. 2006년 3월 16일 석유 및 천연자원의 국유화와 함께 광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서 베네수엘라 헌법 제302조, 제203조에 명시된 국가소유권의 천명 및 강화를 담고 있다.⁹¹⁾

1) 양허권의 면적

양허권 취득지역의 면적단위는 헥타르(ha)이며, los lote는 12 unidades parcelarias로 구성되며, 이는 최대 6156이다. 양허권은 2 lote(=12312 ha)를 넘지 않는다(법 제28조).

2) 광업권 기간

광업권(Concession)은 10년 미만 기간으로 비연속적 2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며, 양허권 획득자의 채굴권은 3년으로 보장되며, 1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법 제49조).

3) 광물자원 세금

광물자원관련 세금에 관한 것으로서 금·다이아몬드와 그 밖의 광물로 나누어 채굴표면세와 채굴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채굴세 관련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류의 경우 상업가치의 4%, 금과 은은 3%, 그 외에는 4%로 규정하고 있다.

9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20~23쪽.

(2) 광업투자법(De Inversiones Mineras)

- 신외국인투자법(1990. 1. 공포, 제727호)
- 상표·특허·로열티에 관한 개정법(1992. 2. 공포, 제2095호)
- 은행법 개정법(1993. 11. 공포, 제3228호)
- 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99. 10. 3. 공포, 제356호)
- 전기서비스 법률(1999. 9. 17. 공포, 제319호)
- 입찰법(1999. 9. 5. 공포, 제296호)
- 공공 공사에 관한 법률(1999. 9. 17. 공포, 제318호)
- 가스법(1999. 9. 12. 공포, 제310호)
- 광업법(1999. 9. 5. 공포, 제295호)
- 금융에 관한 법률(2000. 3. 28, 관보 36920호)
- 광물법(2001. 3. 6. 공포, 제1234호/관보 37155)
- 조세법(2001. 10. 17. 공포, 관보 37305호)
- 토지·농지에 관한 법률(2001. 11. 9. 공포, 제1546호)
- 투자·촉진 보호법(2001. 11. 13. 공포, 제5555호)
- 원유·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법(2006. 3. 1. 공포)

2. 탄화수소법(hydrocarbon law)⁹²⁾

(1) 국유의 원칙

제1장에서는 원칙규정으로, 베네수엘라 내 모든 탄화수소물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석유에너지부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2조, 제1조부터 제3조까지).

92) 베네수엘라 헌법은 2009. 2. 15.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종전 헌법에 석유라고 표현된 것을 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의미의 탄화수소(hydrocarbon)로 고쳤다(실제 이들은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물이나 그 밖의 불순물의 혼합물이다). 그 이유는 차베스정부 하에서 외국 자본 및 우파들이 천연가스는 석유가 아니니까 민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연가스 민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 기업활동의 통제

제2장에서는 탄화수소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경쟁, 자본참여, 유통, 생산, 공급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장에서는 탄화수소와 관련된 주요 활동의 조건, 국가기업, 합작법인(Empresas Mixtas)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정부와의 계약은 최대 25년까지만 가능하며 15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그 밖에 증여와 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세금은 3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4조), 벌칙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Ⅲ. 페 루

1. 광업 관련법

(1) 광업 일반법⁹³⁾

이 법은 광업부문에 대한 기본 법률로 그 밖의 광업관련 법령 및 규정의 근거가 된다.

(2) 광업부문 투자진흥 및 보장 규정⁹⁴⁾

광업 일반법 제9장 광업활동 투자진흥 및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다.

(3) 광업투자진흥법(제708호)⁹⁵⁾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여건 보장을 위한 투자보장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3) Ley General de Minería, Decreto Supremo 014-92-EM(1992. 6. 3)

94) Decreto Supremo 024-93-EM(1993. 6. 7)

95) Ley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en el Sector Minero; Decreto Legislativo 708.

(4) 상기 법령 등에 따른 광업분야 인센티브

1) 세제 안정

광업부문 투자가는 투자승인 시점에서 유효한 세제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세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개정세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계정된 세금이 적용 가능하다).

2) 외환 안정

광업부문 투자기업에 자국화 및 외화의 자유로운 사용과 보유 외환의 국내외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배당금, 보유외화, 그 밖의 자본금 등의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3) 경영 안정

투자계획 승인 시 투자업체는 정부와 경영안정 계약을 체결, 이 계약을 통해 정부가 지원 사항을 개별적으로 문서로 보증하게 되며, 이 조항은 사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변경이 불가능하다.

2. 석유관련법

탄화수소에 관한 기본법으로 법률 제26221호(1993. 8. 20)가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명령으로 Supreme Decree 제042-2005-EM호(2005. 10. 14), 기본법 제11조를 승인한 Supreme Decree 제045-2008-EM호 (2008. 9. 20)가 있다. 이에 관한 개정법으로 법률 제27377호(2000. 12. 7)가 있다.⁹⁶⁾

(1) 석유 및 가스 기본법(법률 제26221호)⁹⁷⁾

이 법은 석유가스 분야의 탐사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다음과 같이 자유 경쟁, 세제 안정성,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

96) Peru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9, pp.49~54.

97)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하고 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하여 세제에 관한 규칙들이 있다.

1) 자유 경쟁의 보장

자유 경쟁 및 경제활동 개방에 기초한 자원개발 탐사를 장려하고 있다.

2) 세제 안정성의 보장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세제 및 외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3) 계약 안정성의 보장

에너지광업부가 승인한 양허계약/서비스계약 등에 따라 자원 탐사 개발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서명된 계약은 양방 계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의 경우에만 개정이 가능하도록 헌법 제62조에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계약의 개정은 대통령령(Decreto Supremo)에 의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1장(Title I)에서 법의 적용범위, 목적 등을 서술하고 있고, 제2장(Title II)에서 탐사와 이용, 제3장(Title III)에서 파이프라인, 제4장(Title IV)에서 저장, 제5장(Title V)에서 정제와 처리, 제6장(Title VI)에서 운송, 유통 및 판매, 제7장(Title VII)에서 자유거래, 제8장(Title VIII)에서 천연가스의 유통, 제9장(Title IX)에서 일반조항, 제10장(Title X)에서 경과규정, 제11장(Title XI)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탄화수소법 (법률 제26211호)

1993년 후지모리 대통령은 새로운 탄화수소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계약은 Perupetro가 관장하고, 계약은 에너지광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의 내용을 보면, ㉠ 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 계약 기간은 석유 30년, 가스 40년, 탐사기간 7년, ㉢ 세금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법인소득세 30%), ㉣ 국제적 중재 가능, ㉤ 외국화폐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경쟁시장

제도 도입, ⊗ 연료가격의 자율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그 밖의 석유가스 관련법

Petroperu에 관한 석유회사법,⁹⁸⁾ 천연가스산업화개발진흥법(법률 제 27133호)과 규정, 석유가스 운송규정, 천연가스 배급규정이 있다.⁹⁹⁾

(4) 바이오에너지법

1) 바이오연료시장진흥법(법률 제28054호)¹⁰⁰⁾

이 법은 자유경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토대로 바이오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적 틀을 설정하고 있다. 2006. 6. 30.부터 북부 La Libertad, Lambayeque, Ancash, Piura 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가솔린에 무수에탄올(7.8%)을 혼합한 에코 가솔린(Gasolina Ecológica)의 생산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2010. 1. 1.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디젤유에 바이오디젤(5%)을 혼합한 에코디젤(Diesel Ecológica)을 2008. 1. 1.부터 야자수가 풍부한 Amazonas, Loreto, Ucayali, San Martin 등 일부 주에서 상용화하고, 이를 2010. 1. 1.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 내용을 보면 자유경쟁과 자유접근의 토대 위에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밝히고 있고(제1조), 제2조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에서는 정책수단, 제4조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제5조에서는 대체작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바이오연료시장진흥법 시행규칙(제013-2005호)¹⁰¹⁾

바이오연료 사용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 연료의 생산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¹⁰²⁾

98) Legislative Decree No.43(1)

99) 각각 D.S. 040-99-EM; D.S. 041-99-EM; D.S. 042-99-EM.

100) Ley de Promoción del Mercado de Biocombustibles(2003. 8. 8)

101) D.S. 013-2005-EM(2005. 3. 30)

102)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11쪽.

IV. 아르헨티나

1. 광업관련법¹⁰³⁾

(1) 광업법(광업기본법, Código de Minería)

광물자원의 소유·탐사·생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모든 광산개발은 광업권의 취득, 광산물의 채굴·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광업법에 따라야 한다(광업법 제1조). 1887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법률 제25225호, 대통령령(Decreto) 제456호이다. 부속법으로 광산절차법(Código de Procedimientos Mineros)이 있다.

1) 광산·광물 개발 책임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속하며(광업법 제7조), 광물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에 있다(아르헨티나 헌법 제124조). 즉, 연방정부는 광업관련 국가정책의 수립·조정 역할을 하며, 각 주정부는 이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프로젝트·입찰 책임

2003년 말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탐사 지역, 해외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입찰 등에 관해서는 주정부 소관사항이다.

3) 광물별 개발권

광물의 개발권에 대하여는 이를 광물별로 주정부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2조).¹⁰⁴⁾

10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24~29쪽.

104) Article 2 - As for the rights recognized and conferred by this Code, mines are divided

카테고리	개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금속/비금속 광물 - 고체연료 광물 - 원천지열(내인성 증발)로써 형성된 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에게 있음 - 개발하려는 자는 주정부에 광업권(Concession)을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가지게 됨 ※ 금속광물의 경우 통상 토지소유자와 자원개발권자가 다르므로 양자는 협상을 통해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함 ※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자에게 그 토지사용 및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해야 하며, 개발권자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함 <p>(개발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토지매입 의무는 없으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 적절한 시장가를 주고 부지를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금속 광물 - 염전·초석·이탄전 등 - 강가나 냇물에서 채취하는 금속과 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라이선싱 권한 있음 -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발을 원하지 않고 제3자가 원할 경우 권한 양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암·모래 등 건축용 자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만 가능함 (공적사용을 제외하고 이들 라이선싱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함)

into three categories:

- 1st. Mines whose soil is an accessory and which belong exclusively to the State and which may only be tapped or exploited under a legal license which is gra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 2nd. Mines which, based on their importance, are preferentially licensed to the owner of the soil: and mines which, as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deposits, are used on a share basis.
- 3rd. Mines which belong solely to their owner and which cannot be tapped or exploited by anybody without their owner's consent, except in case of public benefit or good.

4) 광산개발 기업의 책임과 의무

광산기업은 광물개발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광업법 제161조).

광산기업은 i) 채굴을 위한 천공계획도, ii) 광맥 발굴 30일 이내에 탐사천공 깊이 및 두께, 예상 생산량 및 광물의 품질보고서, iii) 매년 1분기에 개발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iv) 매월 각 공구별 생산기록부 등의 서류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Públicos) 지역 광업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광물 채굴과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의 감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사항 재발 시 관할 당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산개발업체는 관할 당국에 환경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매 2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광업투자법(De Inversiones Mineras)

광업에 대한 통합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i)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인적 대상과 등록 등에 관한 규정, ii) 회계 안정성과 소득세, 매장량 평가, 세금공제 추가조항 등을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세금 처리 등에 관한 규정, iii) 수입 상품에 관한 규정, iv) 광산 사용료인 로열티에 관한 규정, v)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vi) 광업사무국 등 승인관련 부서에 관한 규정, vii)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투자 와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기 본 법	법률 제24196호 법률 제24296호(수정)
금융 및 부가환급에 관한 법률 (De Financiamiento y Devolucion IVA Reglamento)	법률 제24402호
광업활동법 (De Actualización Minera)	법률 제24498호
광업재조정법 (De Reordenamiento Minero)	법률제 24224호

(3) 외국인투자법(De Inversiones Extranjeras) (법률 제21382호)

법 제3조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1조).

(4) 광업활동을 위한 환경보호법(De la Protección Ambiental para la Actividad Minera, 법률 제24585호)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제282조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인적 적용범위는 모든 개인과 공공 및 민간단체와 기업이며, 물적 적용범위는 탐사, 개발, 가공 등이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대상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탐사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위험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 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피해의 복구, 폐쇄,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제19조).

(5) 광물상업시스템신설법(De Creación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 법률 제24523호)

광업사무국 산하에 국가 주도로 광물상업시스템(El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i) 광물상업데이터

베이스(Base de datos de comercio minero), ii) 정보 및 상담 센터(Centros de información y consulta), iii) 정보관리인(Agentes de información), iv) 사용자(Usuarios)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제2조). 이하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제3조), 정보 및 상담 센터의 기능(제4조 및 제5조), 정보관리인의 의무(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일정한 정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제7조 및 제8조).

(6) 연방광업계약법(De Acuerdo Federal Minero, 법률 제24228호)

전국 각 지역에서의 광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방광업계약에 관한 원칙과 체계를 규정한 법이다.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타이틀 19에 따라 국가와 체결하는 광산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따른 탐사 및 채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Primera). 다음으로는 타이틀 18에 따라 지역에서 발굴된 자원의 공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Segunda), 이와 같은 방법으로 23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primera ~ vigesima tercera).

(7) 광업 상하원 위원회법(Comisión Bicameral de Minería, 법률 제24227호)

전국 상하원 합동으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는 입법부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¹⁰⁵에 대한 참여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8) 광업권 획득 절차

광업권(탐사 및 개발권)을 얻는 절차는 광업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광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10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 공화국의 민주, 자유, 인권,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통합, 빈곤 퇴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조직이다. 특히, 지역 에너지 자원에 관한 협력과 재생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www.mercosur.org.uy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업권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신청기업에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1	브리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광업국에 대한 브리핑 실시 - 법인 및 광산에 관한 상세정보 보고
2	현장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국 공무원과 브리핑 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3	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후 접수건별로 서류철을 작성하여 심사 시작 - 관련서류는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관련부서로 이관
4	프로젝트 등록 (광업법 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공시·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 문제확인 후 프로젝트 등록
5	처리비용 지불 (광업법 2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 양허비용을 납부하면 3년간 광업권 보장
6	환경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분석 결과보고
7	광물 상세보고 (광업법 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광물에 대한 상세한 보고(광산위치·광물종류 및 위치(깊이)·광물존재증명서류 등 제시)
8	측량실시 (광업법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에서 등록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광산에 대한 측량실시 - 측량 전 공시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 해결 필요
9	지적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결과를 지적부에 등록하고 광산개발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 - 광업권 유지를 위해 매년 정해진 유지비(Canon) 납부
10	탐사/채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을 인정받으면 해당지역의 탐사 및 채굴 가능

(9) 개발계약의 형태 및 절차

1) 광업투자 방법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한 직접 광업에 투자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 ① 광업권을 허가받아서 직접 탐사 및 개발을 하는 방안
- ② 탐사 전문업체의 탐사권을 매입하는 방안
- ③ 이미 생산하고 있는 광산의 지분을 구입하는 방안
- ④ 주정부 회사가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곳에서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입찰에 공모하는 방안

2) 채광권 취득 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유지요건	내 용
① 개발권 임대료 납부	광물 카테고리 및 개발지역 단위(크기)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800페소로 약 300불이 안 되는 미미한 금액임(국회에서 임대료를 인상 논의 중임)
② 최소한의 투자	개발권자는 최소 연간 임대료의 300배 이상을 개발비로 투자해야 함
③ 개발중단의 경우	4년 동안 탐사나 개발 또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 관련 기관은(주로 주정부) 채광권자에게 재투자 계획서를 요청하며 동 계획서는 5년 내에 시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위 3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개발권을 박탈당하며, 다만 ①번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탐사나 개발권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부서는 탐사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벌금·작업 정지·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석유관련법

(1) 탄화수소법(Hidrocarburos, 법률 제17319호)

아르헨티나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위하여 종전 탄화수소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탄화수소 사업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허가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바이오에너지법

1) 세계 주요 농업 생산 및 수출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6. 5. 1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를 제정했으며, 2007. 2. 12. 관련 시행령 (Decreto 109/2007)을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식물성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법으로 제정 4년 후인 2010년부터 국내에서 판매 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의 최소한 5%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향후 15년간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동법의 집행기관을 창설하며, 동기관의 권한을 설정하고,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이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개발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는 법의 집행,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의 기능, 제5조에서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의 질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이하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V. 콜롬비아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료용 알코올 사용법(제693호, 2001. 9. 19)

연료용 알코올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 제품의 생산, 상업화와 소비를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였다.

(2) 형법 개정(법령 제1028-2006호, 2006. 6. 12)

이 법을 통해 형법 제10권에 ‘제6장: 탄화수소와 그 파생제품, 바이오연료와 그 혼합제품 등에 대한 압류,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추가하였다.

(3) 바이오연료에 관한 법령(법령 제939호, 2004. 12. 31)

디젤엔진용 동·식물성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4)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 저장, 유통과 판매에 관한 기술적 규정 (시행령 제180687-2003호, 2003. 6. 17)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뜻밖의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법 제693호에 의해 규정된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 저장, 유통과 혼합비율에 관한 기술·안전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5) 연료용 알코올법 제693호(2001년 제정)의 시행세칙
(시행령 제3862-2005호, 2005. 10. 28)

세제효과를 보기 위해 법 제693-2003호가 다루는 가솔린엔진용 연료와 연료용 알코올의 혼합은 가공 또는 생산 과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6) 바이오연료진흥법(제2,748-05호, 2005. 10. 7)

이 법은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제도에 명시된 청정개발제도(CDM) 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추구함.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디젤, 무수에탄올, 함수에탄올 등을 말하며, 동 연료 생산투자자를 위한 세금혜택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⁶⁾

VI. 파라과이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바이오연료진흥법」이 있다.

(1) 바이오연료진흥법 제2748-05호의 시행세칙 규정
(시행령 제7412-06호, 2006. 4. 27)

바이오연료의 생산·판매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행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상업부차관보실로 하여금 검증·승인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을 상공업부에 위탁하고 있다.¹⁰⁷⁾

106)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9~10쪽.

107)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10쪽.

(2)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규정(시행령 제7235-07호, 2007. 4. 27)

2007년 말까지 화석연료 1리터당 바이오디젤 최소 1% 혼합 사용, 동 비율을 2008년에는 3%, 2009년에는 5%로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VII. 볼리비아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으로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장려법』(제 3207호, 2005. 9. 30)이 있다. 이 법은 석유디젤에 대한 바이오디젤 첨가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10년 안에 20%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함. 또한 탄화수소 특별세, 탄화수소 직접세, 국내 현행 총 세금부담의 50% 등을 면제하는 세금혜택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⁸⁾

VIII. 우루과이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재생가능한 석유대체연료 생산법』(제17567호, 2002. 10. 1)이 있다.

국산 동·식물성 원료로 재생가능한 석유대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국가적 관심사로 선언함. 행정부는 공업·에너지·광업부, 농축수산부, 주택·국토관리·환경부, 그리고 연방 연료·알코올·시멘트관리국을 통해 국내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유통·소비 개발에 있어서의 실행가능성, 요구조건과 적용가능한 법적제도를 분석함. 또한 국산 동·식물성 원료로 제조한 대체연료 100%에 대해서는 석유연료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¹⁰⁹⁾

108)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9쪽.

109)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11쪽.

제 3 절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I. 브라질

1. 개 관

브라질 에너지부에서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산업개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들이 있다. 투자관련기관으로는 무역투자진흥청(APEX), 중앙은행(Banco Central) 등이 있다.

2. 에너지부¹¹⁰⁾



출처 : 브라질 에너지부 (2009. 11. 5. 현재)

110) www.mme.gov.br

3.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www.desenvolvimento.gov.br
브라질 석유관리국(ANP) (본사, 상파울루)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 (ANP-Sede, são Paulo) www.anp.gov.br
광물생산관리국 (DNPM)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www.dnpm.gov.br
응용경제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www.ipea.gov.br
에너지환경연구소 (IBAMA)	Inst. Bra. de Meio Ambiente e Energias Renováveis www.ibama.gov.br
브라질 광업협회(IBRAM)	Instituto Brasileiro de Mineração www.ibram.gov.br
브라질 중앙은행	Banco Central www.bacen.gov.br
브라질 금속협회	Associação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is www.abmbrasil.com.br
브라질 철강협회	Instituto Brasileiro de Siderurgia www.ibs.org.br
브라질 무역투자진흥청	Agênci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 www.apex.org.br
페트로브라스	Petrobras Brasileiro S.A. www.petrobras.com.br

II.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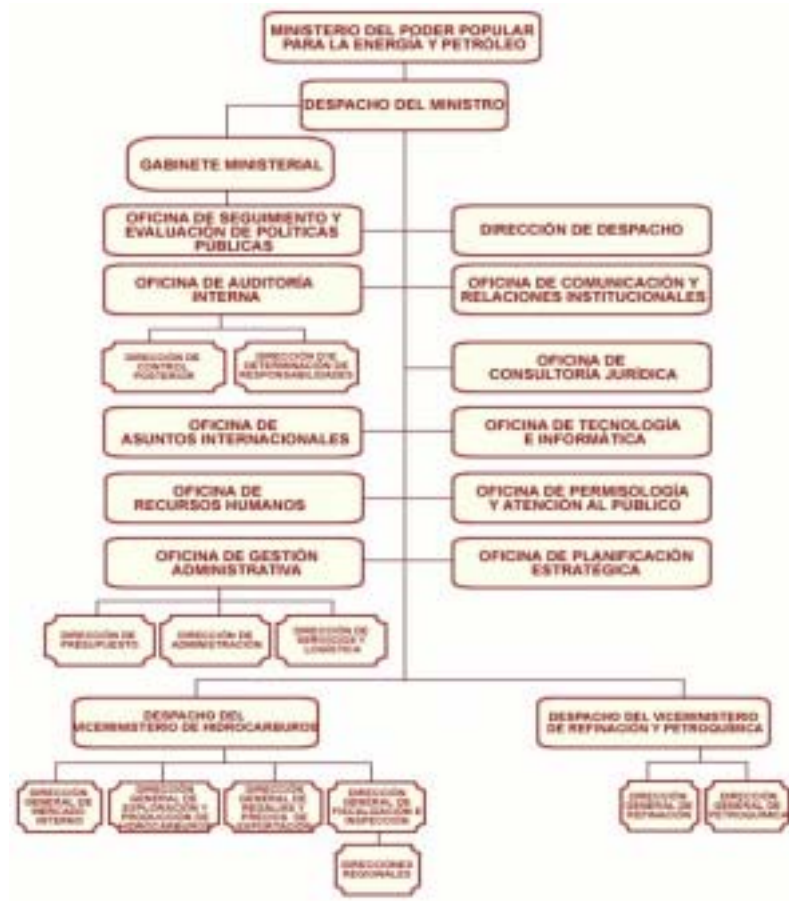
1. 개 관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산업은 개발 상류부문(upstream, 탐사·생산)에서 하류부문(downstream, 수송·정제·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 국영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부서가 감독기능까지 보유한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물분야의 경우 규제기관 및 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물양허권 관리부 (Direction General de Concesiones Mineras)	광물지적부 관리, 상업등기관련 행정절차
광물 개발·경제부 (Direction General de Planificacion y Economia Minera)	광물관련 통계관리, 연구·계획 및 통제 절차
조세·광물통제부 (Direction General de Fiscalizacion y Control Minero)	광물조세 관리, 감독

2. 에너지석유부



출처 : 베네수엘라 에너지석유부 (2009. 11. 5.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석유부(MENPET)¹¹¹⁾가 관할하며, 2007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석유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인 PDVSA 사장을 겸하고 있다. 에너지석유부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다양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관리하며, 석유와 전력시장 분석, 가격 조정, 환경오염대책 마련, 탄화수소와 관련 정책 및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¹¹²⁾

3.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베네수엘라 최대의 공기업이면서 석유 핵심기업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 S.A.; PDVSA)가 있다. 탄화수소와 관련된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PDVS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력사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 PDVSA는 에너지자원 개발에서 정제 및 발전부문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지배적 역할을 하는 수직통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¹¹³⁾ PDVSA의 주요 자회사 및 부속기관으로는 PDVSA CVP(원유 개발·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약정 체결업무), PDVSA GAS(가스 개발·생산 등 가스사업), PEQUIVEN(석유화학 사업(플랜트 및 제품)), INTEVEP(원유 탐사 및 개발 조사, 에너지관련 기술연구 수행), BARIVEN(PDVSA 구매입찰 담당회사), PDV MARINA(PDVSA의 조선사업 총괄), DELTAVEN(PDVSA의 직영 석유제품 유통 담당), CITGO(미국 내 PDVSA 정유시설(2곳) 운영, 미국 내 직영주유소 운영 및 가솔린, 등유(난방유) 등 공급·판매), PDVAL(PDVSA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한 식품 유통) 등이 있다.¹¹⁴⁾

111) 2005년까지 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eras; MEM)이었지만, 2007년부터 석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너지석유부(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MENPET)로 부르고 있다.

112) www.mem.gov.ve

113)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16쪽.

114)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9쪽.

4. 산하기구

에너지석유부의 산하기구로는 전력공사(C.A de Administracion y Fomento; CADAFE), 석유공사(Petroleo de Venezuela S.A; PDVSA), 가스공사(Ente Nacional del Gas; ENAGAS), 전력서비스지원국(Fundacion Para el Desarrollo del Servicio Electrico; FUNDELEC), 석유화학공사(Petroquimica de Venezuela S.A; PEQUIVEN), La Costa Oriental del Lago 전력공사(ENELCO), 베네수엘라 전력에너지국(ENELVEN), Barquisimeto 전력공사(ENELBAR), La Costa Oriental del Lago 지역발전협회(DUCOLSA),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등이 있다.¹¹⁵⁾

5.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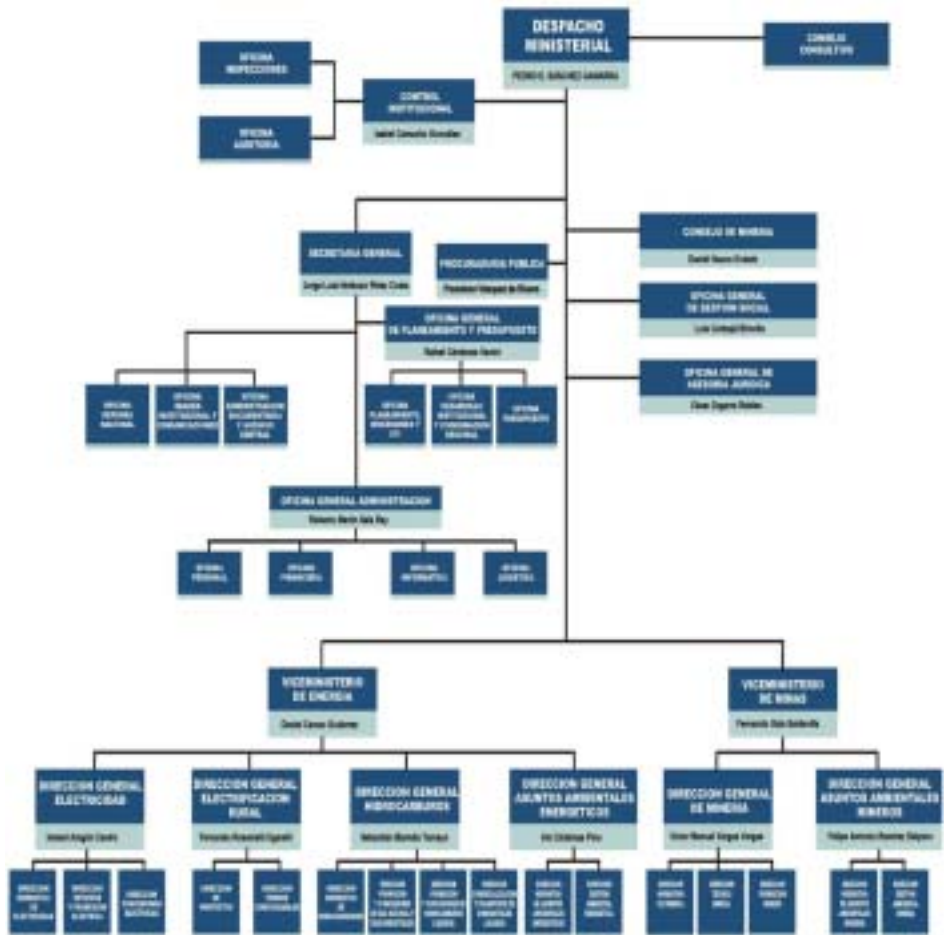
국영광업공사 (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 www.cvg.com
투자청 (CONAPRI)	Consejo Nacional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www.conapri.org
기초산업·광물부 (MIBAM)	Ministerio de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 www.mibam.gob.ve
광물협회 (CAMIVEN)	Camara Minera de Venezuela www.camiven.org.ve
금속·광물협회 (AIMM)	Asociación de Industriales Metalúrgicos y de Minería de Venezuela www.aimm-ven.org
제철연구소 (IVES)	Instituto Venezolano de Siderurgia www.ives.org.ve
지질·광물연구소 (INGEOMIN)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www.ives.org.ve

115)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18~19쪽.

Ⅲ. 페 루

1. 에너지광업부

정부기관으로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¹¹⁶⁾가 있고, 장관 1인과 에너지담당 차관(Viceministerio de Energía)과 광업담당 차관(Viceministerio de Minas)이 있다.



출처 : 페루 에너지광업부 (2009. 11. 5 현재)

116) www.minem.gob.pe

2.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경제부 (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www.mef.gob.pe
상공부 (MINCETUR)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www.mincetur.gob.pe
투자진흥청 (Proinversión)	Agenci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www.proinversion.gob.pe
광업석유에너지 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Petróleo y Energía www.snmpe.org.pe
상류부문 석유공사 (Perúpetro)	www.perupetro.com.pe - 페루의 광구 분양권 및 석유산업 규제권 보유 -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석유회사들과 광업권계약 협상 담당
하류부문 석유공사 (Petroperu)	www.petroperu.com.pe - 페루 4개 정유시설 및 북페루송유관(Norperuano) 운영 - 국내 석유제품 판매 등 하류부문 사업 총괄

IV. 칠 레

1.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Minería)

정부기관으로서 에너지광업부와 14개 지역별 광업지청(Seremis)¹¹⁷⁾가 있다. 에너지광업부는 광산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최적화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목표로서 전국 광산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 성장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동 참여의 조성, 광업부문의 현대화, 공공기관의 현대화, 칠레 국제광산 리더십의 확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준수하는 광산 자원의 관리 등을 들고 있다.¹¹⁸⁾

117) www.minmineria.cl/574/propertyvalue-1937.html

118) www.minmineria.cl/574/propertyvalue-193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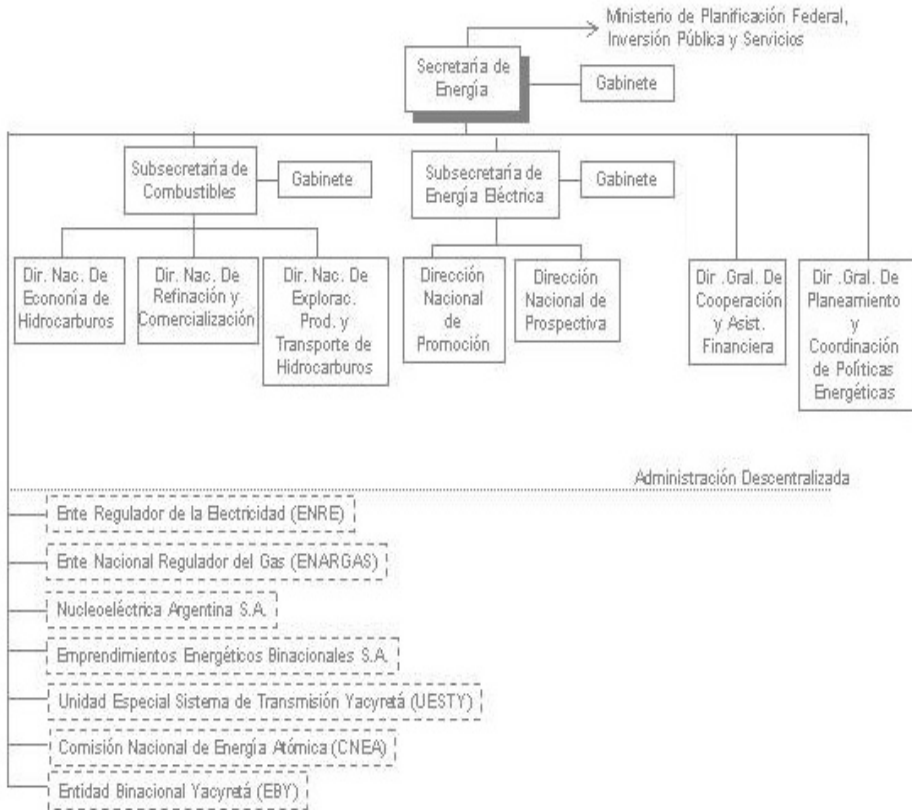
2.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국가에너지 위원회(CNE)	Comision Nacional de Energía www.cne.cl - 수력, 화력, 풍력, 원자력,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각종 에너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위원장은 장관 겸임)
구리위원회 (COCHILCO)	Comision Chilena del Cobre www.cochilco.cl - 에너지광업부 소속기관 - 정부에 구리 및 그 밖의 광물에 관한 정책 자문
국영구리공사 (CODELCO)	Cooperacion Nacional del Cobre de Chile www.codelco.cl - 에너지광업부 소속기관 - 소속 6개 광산 채광·개발과 채광한 구리 판매 등 수행
국립광산기업 (ENAMI)	Empresa Nacional de Minería www.enami.cl - 중소 광업회사 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 - 중소광산으로부터 광물 구매, 용자 알선, 탐사 장려
국립지질연구소 (SERNAGEOMIN)	Servici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www.sernageomin.cl - 광업청으로서 에너지광업부에 소속된 광물 및 지질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외국인투자 위원회	Comité de Inversiones Extranjeras www.cinver.cl - DL 600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청을 접수하고 투자자와 투자조건에 관한 협약 체결 - 경제부/재무부/기획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
광업협회 (SONAMI)	National Society of Mining www.sonami.cl - 대부분 광업회사를 회원으로 최대 광업단체 결성(1883) - 정부에 대해 광업계의 이익 대변
광업자문위원회	Consejo Minero de Chile A.G. www.consejominero.cl - 구리·금·은 생산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결성(1998) - 대부분의 민영광업회사와 CODELCO 등 20여사 가입 - 회원사들의 구리생산량은 2004년 기준 칠레의 97%

대형광산기자재 공급협회 (APRIMIN)	Asociación de grandes proveedores industriales de la minería www.aprimin.cl - 23개의 주요 광산기자재 공급업체들의 협회
------------------------------	---

V. 아르헨티나

1. 에너지부¹¹⁹⁾



출처 :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2009. 11. 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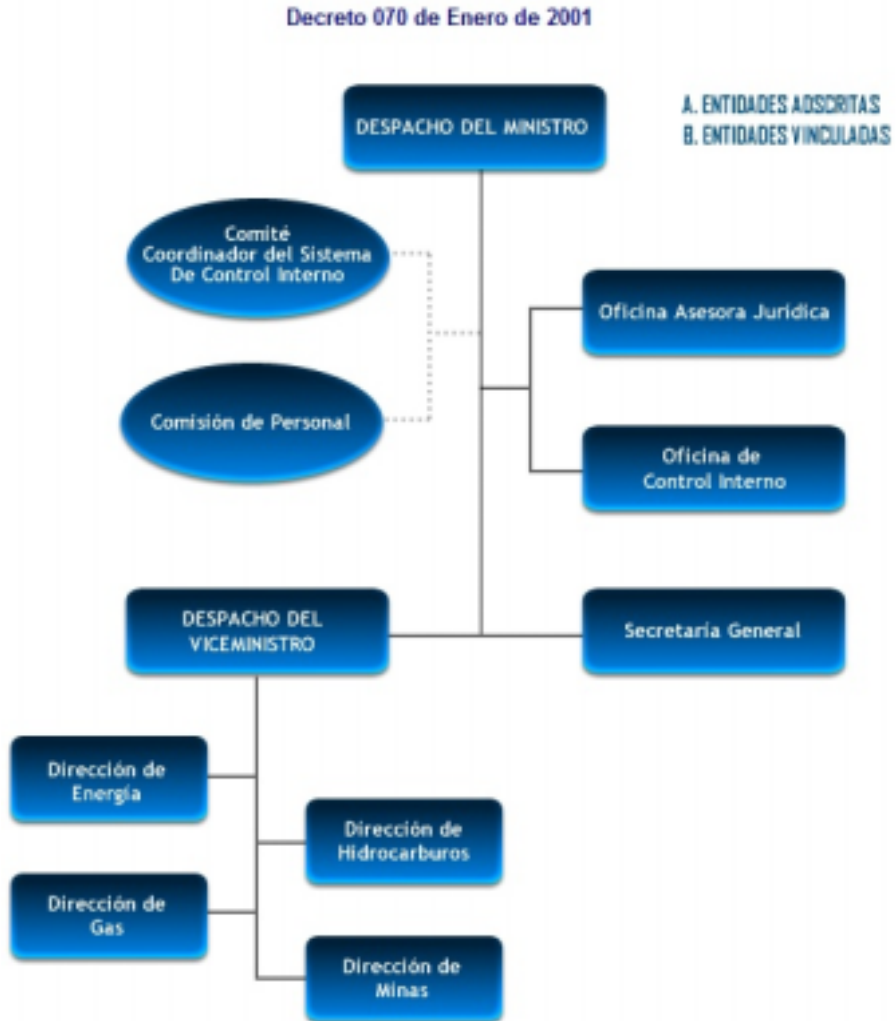
119) www.energia.gov.ar

2. 광업분야

광업청	<p>Secretaría de Minería www.mineria.gov.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자원 탐사개발 관련 기술지원, 광물 탐사개발진흥 기획 - 아르헨티나 연방기획 · 공공투자 및 서비스부 산하 - 주요부서 및 업무내역 <p>①국가광물국(Dirección Nacional de Minería) ②탄화수소 탐사 · 생산 · 수송국(Dirección Nacional de Exploracion, Produccion y Transportacion de Hidrocarburos) ③국토전략기획국(Dirección Nacional de Planificacion Estrategica Territorial)</p>
광업차관실	Secretaría de Minería de la Nación www.mineria.gov.ar
광업지질관리국 (SEGEMAR)	Servicio Geológico Minero Argentino www.segemar.gov.ar
환경개발국	Secretaría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Unidad de Gestión Ambiental de la Actividad Minera)
광업위원회 (CONFEMIN)	Consejo Federal de Minería
투자진흥청	ProsperAr www.prosperar.gov.ar
국세청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AFIP) www.afip.gov.ar
관세청	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VI. 콜롬비아

1. 에너지자원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¹²⁰⁾



출처 : 콜롬비아 에너지자원부 (2009. 11. 5. 현재)

120) www.minminas.gov.co

2.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무역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www.mincomercio.gov.co
국영원유회사 (ECOPETROL)	Ecopetrol S.A. www.ecopetrol.com.co
국영가스회사 (ECOGAS)	Empresa Colombiana de Gas-Ecogas www.ecogas.com.co
국가에너지 제정단(FEN)	Financiera Energética Nacional www.fen.gov.co
국가원유단 (ANH)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www.anh.gov.co
에너지광업 계획단(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ética www.upme.gov.co
지질학광업단 (INGEOMINAS)	Instituto Colombiano de Geología y Minería www.ingominas.gov.co

제 4 장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 법제 및 사례

제 1 절 각 국가별 투자 법제 비교

I. 브라질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²¹⁾

1) 회사설립 개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할 회사의 종류, 현지법인(subsidiary)과 지사(branch),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 S.A.)¹²²⁾와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¹²³⁾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i) 브라질에서 지점개설이 어렵고, ii) 현지법인과 해외본사와의 책임관계를 절단할 수 있고, iii) 현지사업의 수행과 현지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2) 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 현지법인의 임시대표 선임과 주소선정, CETESB의 환경허가(Licenciamento Ambiental), 소방안전 검사(Vistoria do Imóvel), 회사명의 확정, 설립정관의 작성, 주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NIRE), 연방세무국에 법인납세등록신청(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121)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37~49쪽.

122)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며,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1976. 12. 12. 제6404호). 1997. 6. 5. 제9437호, 2001. 10. 31. 제1030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다.

123)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형태이며, 주식회사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다.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제10406호).

CNPJ), 은행계좌 개설,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연방세무국에 외국 투자가의 법인납세등록신청(CNPJ), 투자금의 송금과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 등록, 州 세무국에 등록(ICMS), 市 등록(CCM)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3) 지사설립 절차

외국회사가 브라질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branch)나 사무소 등을 설립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공법적 규제

1) 핵에너지 분야

브라질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하여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제 21조 제23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자의 참여가 금지된다.

2) 광물자원 분야

지하자원, 광산업(조사·채굴·가공 등)¹²⁴의 경우 모든 업체들은 사업개시 이전에 자원에너지부(Ministério das Minas Energia)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취득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국·내외 업체 모두에게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다.¹²⁵

① 국경지대 투자금지

외국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규제는 국경지대 투자금지이다. 브라질 국경지대의 총길이는 15,719km로서 국경선을 기준으로 150km 근방 이내에서 외국업체는 광물조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124)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되었으며,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2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49~50쪽.

② 환경적 규제

광산개발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부 (Ministerio do Meio Ambiente; MMA)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석유자원 분야

석유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3) 투자유인 법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브라질 현지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Isonomia Legal a Fiscal). 따라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브라질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의 혜택 및 세금 인센티브 등을 얻을 수 있다.¹²⁶⁾

1) 연방정부 인센티브

연방정부는 경제·사회적 발달이 늦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과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북동부 지역 투자는 SUDENE(북동부지역 개발기구)가, 아마존 지역 투자는 SUDAM(아마존지역 개발기구)가 관장하며, 이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는 광산개발 수익으로 인한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12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51쪽.

① 소득세 면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에게 생산 가동일부터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시설 확충, 사업 확장·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② 소득세 감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 확충, 사업 확장·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75% 감면
-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50% 감면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또한, 1998년 1월 1일 기준 SUDAM과 SUDENE 지역에서 영업 중인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37.5% 감면
-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12.5% 감면

2) 주정부 인센티브

대부분의 주정부는 주별로 다른 인센티브를 州 내에 설립한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상품유통세(ICMS)를 감면하는 것이다. 한편, 세금 감면 대신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한다. 주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모든 인센티브는 국가 조세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Fazendária; CONFAZ)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노동법

(1) 근로조건¹²⁷⁾

1) 근로시간

정상적인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화이트 컬러 층은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일일근무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하며, 초과근무의 최대시간은 일일근무량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일일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즉, 주 5일 44시간), 일일초과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 가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월급 1/3의 휴가보너스 지급의무가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및 임신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5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기혼여성의 출산의 경우 배우자는 5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3) 해 고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적립된 FGTS 금액의 40%를 벌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임 금

임금협상의 경우 직종별 노조가 있으며, 매년 노조에서 결정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2007년 기준 380헤알

12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56~60쪽.

(환율 US\$ 1 = R\$ 1.77)이며, 최근 수년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표 4-1> 연도별 최저 임금

(단위: 헤알)

임금 인상일	최저임금
03/04/2000	R\$ 151,000
01/04/2001	R\$ 180,000
01/04/2002	R\$ 200,000
01/04/2003	R\$ 240,000
01/05/2004	R\$ 260,000
01/05/2005	R\$ 300,000
01/04/2006	R\$ 350,000
01/04/2007	R\$ 380,000

자료원 : Portal Brasil

5) 퇴직금

모든 회사는 직원 월급여의 8%를 퇴직수당(근속연수보상기금; 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FGTS)으로 브라질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직원이 해고당할 경우 일시불로 찾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 적립금의 50%를 벌금으로, 40%는 직원에게, 10%는 다시 정부에게 지불한다.

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적립금을 찾을 수 없으며, 회사는 벌금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사의사가 있을 경우 이 FGTS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라도 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¹²⁸⁾

¹²⁸⁾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53쪽.

(2) 노동수첩 소지의무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즉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에 관한 신상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¹²⁹⁾

(3)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실업보험·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의 사회보험 형태로 통합한 것으로서 사회보험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INSS)이 있다. INSS의 징수대상은 법인과 개인이며, 징수 비율은 고용주 20%(월 급여대비), 직원 8~11%이다(월 급여 R\$780.79 이상 11%이므로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상여금의 경우 직원 본봉의 100%를 통상 11월에 50%, 12월에 50%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말 상여금(13 salário: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⁰⁾

3. 세 법

(1) 조세체계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으며, 브라질 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담세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과세방식이 아주 복잡하여 기업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

12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57쪽.

13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59쪽.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주·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¹³¹⁾

- 1) 연방세로서, 수출세(IE), 수입세(II), 농지소유세(ITR), 소득세(IR), 공산품세(IFI), 금융거래세(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등이 있다.
- 2) 주세로서,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자동차보유세(IPVA),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다.
- 3) 시세로서, 토지가옥세(IPTU), 서비스세(ISS), 유류세 등이 있다.
- 4) 사회부담금(PIS-COFINS)¹³²⁾으로서, i) 사회보험융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음, ii)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며 수출수입은 과세되지 않음), iii) 금융거래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자금운용 등 당좌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과세함), iv) 사회기부금(CSLL: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지위의 대우를 받는 자에게 부담의무, 부담금 표준액은 법인세 공제 전 이익에 몇 가지 가산항목·감산항목에 대하여 조정을 행한 금액) 등이 있다.
- 5) 그 밖의 주요 부담금으로서, 사회복지원(INSS)에 대한 부담금과 근속연수 보상기금(FGIS)이 있다.

(2) 광산개발세(Compensação Financeira pela Exploração de Recursos Minerais; CFEM)¹³³⁾

광산개발세(1988년 법 제정)는 연방·주·시 정부에게 광산개발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가광물생산관리국

13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61~64쪽.

132) 사회부담금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 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고용주·근로자·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에 의하여 재원이 확보된다. 부담금의 액수는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65~67쪽.

(DNPM)이 법 8876/94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광산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징수한다.

광산개발세는 총 매출액에서 운송비·보험료·ICMS·PIS·COFIN의 세금납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개발업체가 광물을 (판매하지 않고) 가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과된다. 세율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i) 알루미늄·망간·암염·칼륨 3%, ii) 철광석·석탄 및 그 밖의 광물 2%, iii) 금 1%, iv) 보석 및 귀금속 0.2%이다.

납부기간을 보면, 광산업체는 매달 납부하되, 세금산정기준 월의 다음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고지서는 DNP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납기일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광산개발세는 관련 국가기관·주 정부 및 시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광산이 두 도시 사이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각 도시에서 생산되는 광물 생산량에 비례하여 양쪽 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기관(DNPM, IBAMA, MCT) 12%, 주 정부 23%, 시 정부 65%).

광산개발세는 광산소재지의 산업 인프라 개선·환경보호·보건위생 및 교육을 위하여 사용된다.

<표 4-2>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세금명	약자	세율	내용	구분
Imposto de Renda da Pessoa Fisica	IRPF	RS\$1257.12까지 면제 RS\$1257.13-RS\$2512.08 : 15% RS\$2512.08 이상 : 27.5%	개인소득세	연방
Imposto de Renda da Pessoa Juridica	IRPJ	15%	법인세	연방

제 4 장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 법제 및 사례

세금명	약 자	세 율	내 용	구 분
Contribuicao ao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INSS	노동자 급여 공제 11% 고용주 부담 20%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	연방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IPTU	평균 1~3%	가옥세 (재산세)	시
Imposto sobre Propriedade de Veiculos Automotores	IPVA	평균 1~6% 차종과 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외가 있음	자동차세	주
Contribuicao Provisoria sobre Movimentacao Finaceria	CPMF	0.38%	금융거래세 (모든 금융거래에 붙는 수수료)	연방
Imposto sobre Operacoes Financeiras	IOF	1.5% : 금융투자 및 신용거래 25% : 외환 및 보험 등	금융거래세 -일종의 신용거래세로서 대출, 보험,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세금	연방
Imposto sobre Circulacao de Mercadorias e Servicos	ICMS	평균 14% (주마다 틀리고 품목마다 예외가 있음) 상과울루 주의 경우 18%	주 유통세	주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PI	평균 4% (품목에 따라 다름)	공산품세	연방
Imposto sobre Servicos de Qualquer Natureza	ISS 또는 ISQN	평균 1.5~5% (서비스의 종류와 시에 따라 다름)	서비스세	시

세금명	약 자	세 율	내 용	구 분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CSSL	9%	기업의 연간 이윤에 관한 세금	연방
Salario-Educacao	-	2.5%	교육세,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Sistema "S" (Sesc, Sesi, Senai, Senec, Sebrae etc)	-	1~2.8% 기업활동에 따라 다름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자료원 : Almanaque 2007

II. 베네수엘라

1. 투자법제 개관

외국인 투자법으로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나 헌법(제301항에 수록), 1992년 공포된 법령 제2095호(Comunidad Andina 관련), 1999년 공포된 투자촉진·보호법, 특별법 등이 있다.

(1) 법인·지사 설립¹³⁴⁾

1) 회사설립 개요

외국인투자법(1992. 3. 개정, 대통령령 제2095호)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청(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 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34)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25~28쪽.

2) 법인설립 절차

정관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소에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 국세청(Seniat)에 납세자 등록(RIF 및 NIT), 외국인투자청(SIEX)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3) 지사설립 절차

현지법인 설립 대신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국회사의 국적을 보유하며, 본국회사와 다른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지사는 베네수엘라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공법적 규제

1) 외국인 투자금지¹³⁵⁾

① 규제분야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석유·철광석·그 밖의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석유공업, 은행·보험·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 허용된다.

② 석유개발의 제한

석유·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13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29쪽.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정부 수립 이후 1999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2006. 3. 30 의회는 에너지석유부(MENTPET)가 제출한 석유법 합작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주요내용은 ㉠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회사(Empresa Mixta; Joint Venture)를 설립하되 그 회사 지분의 51% 이상¹³⁶⁾을 PDVSA가 소유, ㉡ 합작회사는 생산 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국가의 독점적 판매권 확보), ㉢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금지 및 국내판결을 통한 독자해결 규정, ㉣ 외국기업의 석유 로열티를 기존의 1~16.66%에서 33.3%(2008년 현재)로 인상하였다(가스생산 로열티는 20%).¹³⁷⁾

2008. 4. 15.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시 부과되는 특별부가금’ 규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 5. 부터는 원유 및 정제유 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i) 월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US 70\$ 이상시, 동 평균가격과 US 70\$과의 차액의 50%, ii) 월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US 100\$ 이상시, 동 평균가격과 US 100\$과의 차액의 60%가 특별부가금으로 부과된다.¹³⁸⁾

③ 토지소유권의 제한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기간산업지대, 군사시설지역, 국경지역, 해안가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의 사전인가를 얻어야 한다.

136) 실제 대부분의 합작투자회사의 PDVSA 지분율은 60% 이상이다.

137)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4쪽, 13~15쪽.

138) 이 금액은 전액 ‘국가개발기금’(FONDEN)으로 전입되어 베네수엘라 내 서민주택 건설,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각종 사회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ISLR) 산정 시 손비로 인정된다.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4쪽, 15쪽.

토지취득, 공장의 신규건설 및 증축 시에는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환경적 규제¹³⁹⁾

모든 광물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은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물과 관련된 환경법으로는 「광물채굴·생산에 관한 법률」(1992. 4. 23. 공포, 특별법 제4418호)과 「광물프로젝트·탄화수소채굴·생산에 관한 법률」(1996. 7. 4. 공포, 특별법 제5079호)이 있다.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통하여 환경파괴 등 법에 저촉될 경우 50~50,000 Unit 과세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하다(석유법 제66조).¹⁴⁰⁾

(3) 투자유인 법제¹⁴¹⁾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조세감면, 장단기 금융지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Paraguana 산업단지와 Margarita 자유무역지대, Santa Elena de Uairen 자유무역지대를 설치·운영하며, 수출·수입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석유생산 및 관련사업에 신규투자 시 8%의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석유탐사, 유정시추, 설치, 수송, 저장, 가스저장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 추가로 4%의 소득세가 감면된다(2001. 12. 28. 공포, 특별법 제5566호). 또한, 농업·수산업·관광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에는 8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13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21~22쪽.

140)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41쪽.

14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0쪽.

2. 노동법

(1) 근로조건¹⁴²⁾

1)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4시간,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당 최대 40시간, 주·야간 혼합근무자의 경우 주당 최대 42시간이다.

2) 휴 가

휴가 보너스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하며, 1년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매 1년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1일씩의 유급휴가가 추가되지만, 추가일수는 15일을 최대한도로 하여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2주의 출산휴가가 지급되며, 출산 후 1년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

3) 임 금

고용주는 매년 말 해당 연도 순이익금의 15%를 이익분배금(utilidades)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근로자들에게 배당되는 이익금 분배액은 기 체결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 15일 임금액에서 최고 4개월간 임금액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분배금은 통상 보너스의 개념으로서, 공무원도 1개월~3개월 분 정도를 받는다.

14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3~34쪽.

4) 노조결성

근로자는 10인 이상이면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이면 전국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¹⁴³⁾

사회보장기금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총액의 11%를 고용주가, 4%를 근로자가 매월 사회보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의료·산재로 인한 불구·퇴직 및 사망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연금수혜조건은 750주 이상 부금을 적립한 남자 60세 및 여자 55세 이상이며, 최저연금액은 최저임금의 4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립부금총액에 따라 연금액이 높아진다.

3. 세 법

(1) 조세체계¹⁴⁴⁾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 (SENIAT)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취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2) 법인의 소득세¹⁴⁵⁾

1) 법인의 소득세율

과세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4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4쪽.

14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5쪽.

14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5~36쪽.

<표 4-3> 법인의 소득세율

과세소득(T.U.)	세 율	누진 공제율(T.U.)
0~2,000	15%	0
2,000~3,000	22%	140
3,000~	34%	500

주 : T.U.(tax unit) : 1 T.U.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됨
2007년 11월 현재 1 T.U. = 27,632볼리바르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지방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양도에 대하여 1%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지점이익세

지점이익세는 지점과 베네수엘라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베네수엘라 법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또한 없다.

5) 법인의 소득세는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제출된 연간소득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소득세¹⁴⁶⁾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소득은 소득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며, 봉급과 특별수당 같은 그 밖의 유형의 보상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함께 i) 납세자의 경우 10 T.U., ii) 배우자와 거주자인 각 부양가족의 경우 10 T.U.의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표 4-4> 개인의 소득세율

과세소득 (T.U.)	세 율	
	기본세율	누진공제 (T.U.)
0~1,000	6%	0
1,000~1,500	9%	90
1,500~2,000	12%	135
2,000~2,500	16%	215
2,500~3,000	20%	315
3,000~4,000	24%	435
4,000~6,000	29%	635
6,000~	34%	935

자료 : 관세청

(4) 부가가치세¹⁴⁷⁾

1)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8~16.5%의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데, 199년 최초 15.5%, 2000년 8월 14.5%, 2002년 16%,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4%, 2006년 11%, 2007년 9%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14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7쪽.

14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8쪽.

있다. 다만, 3만 달러 이상의 고급 자가용이나 500cc 이상 오토바이·헬리콥터·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2) 면세대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품목은 쌀, 달걀, 커피, 버터, 마아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 및 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하여도 면제이다.

(5) 금융거래세¹⁴⁸⁾

베네수엘라는 부족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19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세를 적용하였었다. 금융거래세의 세율은 0.5%로 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 유동성자금 및 신탁예금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 제3자에 의한 각종 환어음·약속어음·신용장 등의 현금결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의 횡수, 청산, 양도결제 및 금융기관의 대출·은행 간 대출·은행보증수표의 결제·이자지급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활동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은행 및 상공인이 반발로 2000년 5월부터 폐지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하여 2002년에 부활하여 1년 동안 지속되다 폐지되었으며, 최근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모든 법인 금융거래에 1.5%의 세금을 부과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6) 법인 자산세¹⁴⁹⁾

소득세와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에 소재한 유형·무형자산 액면가액에 대하여 최소 1%의

14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8쪽.

14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9쪽.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준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조정된 유형·무형 자산가액의 순평균액이다. 국세청이 논란 가운데 자산세를 2002년부터 1.7%로 인상하였다.

(7) 지방자치면허세¹⁵⁰⁾

지방자치면허세는 베네수엘라 자치도시 영토관할 안에서 상업적·산업적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매년 신고에 의하여 보고된 회사의 총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사업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세율표에 의하여 자치당국에서 정한다.

세율은 0.25~10%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0.5% 또는 그 이하이다. 자치당국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8) 천연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그 밖의 조세가 부과된다. 광업운영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품목을 채광하는데 따라서 다양한 조세가 부과된다.¹⁵¹⁾ 또한, 2006년 이후 정부는 33.3%의 석유 채굴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도 36%에서 50%(현재)로 인상하였다.¹⁵²⁾

(9) 석유법상 세제¹⁵³⁾

km²당 100 Unit의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 부과 및 초기 5년간 매년 2%가 가산되고, 5년 이후 매년 5% 가산된다. m²당 10%의 적정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Propio)가 부과되며, 판매가격에 대한 총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General)를 30~50% 부과된다. 시체세(Impuesto de Extraccion)는 시추된 석유의 1/3이 과세되며, 수입등록세(Impuesto de Registro de Importacion)는 0.1% 과세된다(석유법 제48조).

15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9쪽.

15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39쪽.

152)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15쪽.

153)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41쪽.

4. 자국산업 보호법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발전’ 및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2008. 1. 11.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MILCO)는 베네수엘라 국내생산 차량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2008년산 외국산 차량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이후 배기량 3,000cc 이상 완제품 차량수입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 투자유치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과 기술도입을 통하여 국내생산을 확대시키려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¹⁵⁴⁾

Ⅲ. 페 루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⁵⁵⁾

1) 회사설립 개요

광업회사는 회사 일반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INACC에 등록해야 하며, 국립등기소(SUNARP) 등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INACC에만 등록하는 회사들은 상호에 광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사가 광업 이외의 분야에도 종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립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광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의 지사는 회사 일반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로는 첫째, 국세청에서 발급 받는 사업자등록증(RUC)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재고조사·결산 장부, 일지, 원장, 임금대장, 회의록, 현금출납부, 매입장부, 매출장부 등 주요 회계장부를

154)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16쪽.

155)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34~38쪽.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스페인어, 국내 화폐로 기장하여야 한다. 셋째,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표 4-5> 페루의 법인설립 방식

종 류	개인형태	기업체형태		
		유한책임회사 (S.R.L.)	주식회사 (S.A.C.)	주식회사 (S.A.)
방 법	개인회사 (E.I.R.L.)	유한책임회사 (S.R.L.)	주식회사 (S.A.C.)	주식회사 (S.A.)
특 징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한 사람으로 구성함	2~20명으로 구성	2~20명의 주주로 구성.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명 이상으로 최고의 수의 제한 없음
자본금	현금, 부동산	자본금은 참여금으로 표시하며 최소한 25%를 불입해야 함	자본금 불입은 국내외 화폐 또는 무형의 기술제공으로 할 수 있음	자본금 불입은 국내외 화폐 또는 무형의 기술제공 등으로 할 수 있음
존속기간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 자료 : Proinversion

2) 법인설립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동시설립 방법과 순차설립 방법이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증인을 통해 설립하여야 하며, 설립자는 필요한 서류와 인적사항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설립의 경우 자본금은 페루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자들은 페루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 초고에 서명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공증인은 이를 토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여 등기를 한다.

순차설립(모집설립)의 경우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서명공증을 받아 지역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고 모집에 응할 신청인 모집공고를 낸다.

3) 지사설립 절차

지사는 본사와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영구적인 법적 대표권이 있으며 본사가 지정한 활동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외국에서 지사를 설립해도 본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사의 유효한 증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에 해당하는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본사의 해당 조직에서 지사설립에 동의했다는 서류로서 i) 지사 자본금, ii) 지사가 종사할 업종이 본사의 회사 정관에 본사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진술서, iii) 지사주소, iv) 최소 1명이 법적 대표자가 국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표자를 임명하고 그에 따르는 위임장, v) 지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 페루의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요비용으로는 공증의 경우 자본금에 비례하고, 공증서 작성비용이 추가된다. 등기비용은 자본금의 3/1000이며, 기타 이사 임명 등록·변호사와 공증인의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2) 공법적 규제¹⁵⁶⁾

1) 광산개발상의 규제

① 광업진흥법에 따른 의무

광산개발에 종사하려는 회사는 법인등록서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명시한 광산운영권 신청서를,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서약서와 첫 해의 유효세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38~49쪽.

② 주거지역·국경지대 투자제한 등

도심 지역에 양여를 신청할 때 양여지역이 주거지역과 전면 일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일치하면 신청면적을 줄이거나 여러개로 나누도록 하는데, 최소 면적인 10 헥타르 미만을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경에서 50km 이내 지역에서는 양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이 의결서를 발행하여 허가한다.

③ 로열티

로열티에는 광산로열티와 광산개발로열티가 있다.

광산로열티는 광산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금속·비금속 광물을 추출하는 대가로 국가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며,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가치 있는 광물을 농축시킨 후에 이를 변형시키는 회사는 최종 생산품 가격 또는 공정한 시장 가격에서 변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로열티를 산출한다.

광산개발로열티는 국가가 자연자원의 추출로 광산업체로부터 징수한 것을 지방정부에게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소득세 징수액의 50%를 지하자원 추출지역의 각 계층의 지방정부에게 배분한다.

2) 환경적 규제

광산운영권 소유자를 포함한 금속광물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에서 광물의 탐사와 추출과정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주위 환경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의 법적 허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광산운영권이나 광물처리권 신청자 또는 확장신청자는 에너지광업부의 광업환경총국에 프로젝트가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서(EIA)를 제출하여야 한다.

EIA에 부가하여 시설·처리·계획·실행 등에 필요한 변화를 자세히 설명한 환경운영프로그램(Programa de Adecuación y Manejo Ambiental; PAMA)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AMA에는 결함과 충격의 확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프로젝트를 현행 또는 장래의 법의 요건에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며 환경심사관이 행한 특별실험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광하려는 경우에는 회복방법, 비용 등을 명시한 폐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산업자는 EIA와 PAMA가 승인된 날부터 1년 안에 폐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유인 법제

1)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 제662호; 1991.08)

외국인 투자개발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2) 민간투자 증진에 대한 기본법 (법령 제757호), 민간투자보장체제 규정 및 수정규정(Decreto Supremo 1612-92-EF)

외국인 투자의 처우에 대한 일반적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3) 내국민 대우의 원칙

위의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고, 증권거래소나 다른 기구를 통한 국내투자자의 지분인수도 완전히 허용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외 지역의 광산이나 삼림, 물, 연료, 에너지를 외국인에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령의 공포 및 내각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2. 노동법

(1) 근로조건¹⁵⁷⁾

노동법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한 임시계약·공사계약·서비스계약 등을 포함한다. 페루에 설립한 회사는 전체근로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는 회사전체 급여 지출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광산근로와 관련하여, 국회는 R. L. No.29012를 통하여 광산의 안전과 건강 관련 OIT의 176번 협약을 통과시킴으로써 페루 정부는 국내법으로 더 높은 질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소한의 조건이행 여부를 보증하게 되었다.

1) 휴 가

기본적으로 30일이며,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이며 12개의 모자 보호법이 있다.

2) 해 고

해고될 경우 1년에 1.5개월분, 최고 1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법과 관련된 소송시효 기간은 4년이지만, 새로운 노동법 프로젝트는 15년을 제의하고 있다.

3) 임 금

상여금은 1년에 2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에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금은 업종에 따라 5~10% 정도를 지급한다.

광산업계의 경우 최근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며, 정상급여(퇴직금과 상여금 포함) 외에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광산업계의 근로자는 8%의

15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53~58쪽.

이익배당금(다른 분야는 5~10%)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배당금의 지급 금액은 3중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통상 급여인 연 15개월분보다 더 많은 18개월분까지의 급여를 받는다.

(2) 사회보장제도¹⁵⁸⁾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세 법

(1) 조세체계

소득세와 임시 총자산세(Impuesto Temporal a los Activos Netos; ITAN), 금융거래세(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ITF), 부가가치세(Impuesto General a las Ventas; IGV) 등이 주요 세금이다.

(2) 소득세¹⁵⁹⁾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연인의 국적, 회사 설립·생산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발생한다.

회사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각 회계연도를 마감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도 납부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를 마감할 때 발생한 총 소득의 30%가 부과된다. 산출한 소득세는 다음 회계연도 첫 3개월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한다. 경비로 처리한 금액의 4.1%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는 세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5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57쪽.

15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59쪽.

(3) 임시 총자산세¹⁶⁰⁾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었던 임시적 성질의 세금이다. 이는 전년 12월 31일까지의 총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며, 3종 소득세 납세자 중 일반소득세 과세대상자로서 현 과세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페루에 적을 두지 않은 회사의 지사·대리점·그밖의 고정 연락사무소에도 적용한다.

세율은 S/.1,000,000.00까지는 0.0%, S/.1,000,000.00 이상은 0.5%이다.

(4) 금융거래세¹⁶¹⁾

금융기관에 국내의 화폐로 입출금을 하는 금액에 대하여 0.08%가 부과되며, 시행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연장가능성이 있다. 이 세금 납부액은 소득세 공제대상이 된다.

(5) 부가가치세 환급¹⁶²⁾

정부는 국가와 탐사투자계약을 맺고 탐사활동을 하는 광업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DL No. 963, 시행기간 2009년 12월 31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국내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매입과 수입·서비스 제공과 이용·건축계약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IGV) 17%와 지역개발세(IPM) 2%를 매입장부에 기장한 날짜의 다음달부터 매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0년간의 조세안정성 계약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42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15년간의 투자촉진보장장려 계약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42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16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59쪽.

16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60쪽.

16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60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탐사투자프로그램 승인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동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최소한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80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IV. 칠 레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⁶³⁾

1) 법인설립 절차

투자준비	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지역 선정, 정관작성 등
설립신청	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등기/공시	등기소에 기업설립 등기 관보에 설립공시 (정관서명 후 60일 이내)
납 세	국세청(Sii)에서 납세번호(RUT) 취득
영업허가	관할구청에서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 취득

① 법인설립 신청

칠레법인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와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Ltda)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¹⁶³⁾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12, 32~35쪽.

칠레는 법정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본금을 정하고 회사 정관 및 기업설립 서류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에는 발기인 인적사항, 회사명 및 주소,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회계연도,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 방법, 청산방법, 중재방법, 주요임원 및 감사 명단 등이 포함된다(다만, 유한·주식회사에 따라 주식관련 내용 등은 일부 상이하다).

② 법인설립 등기 및 관보 게재

회사 정관과 법인설립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등기소(www.conservador.cl)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다. 3~7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비용은 5,500페소+자본금의 0.2%이다(최대 300,000페소).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보(Diario Oficial)에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관보게재 비용은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게재까지 3~10일 정도 소요된다.

③ 납세번호 취득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www.sii.cl)에 납세번호(R.U.T.) 발급을 신청한다.¹⁶⁴⁾ 세무서에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납세번호를 발급한다.

④ 영업허가증 취득

납세번호를 획득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한다.¹⁶⁵⁾ 구청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상이하므로 법인설립 자문번호사를 통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164) 제출서류는 대표자의 칠레 주민등록증(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공증서류), 회사설립 관련서류 일체(공증본), 관보 게재내역 사본, 상업등기 서류 사본, 세무서에 비치된 F-4115 서식이다.

165) 기본제출서류는 대납세번호증(R.U.T.), 회사설립 관련서류 일체(공증본), 회사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관련 관청의 허가서 등이다.

2) 지사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에서 사전에 본사의 법인정관, 위임장, 임명장을 주한 칠레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와야 한다. 준비서류를 칠레 외무부에 제출하여 인증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공증한다. 주재원의 개인 주소지 및 사무실 주소가 확정되면, 2분의 공증서류를 세무서와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납세번호(R.U.T.)와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을 발급받으면 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칠레는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 거주지 확정, 신분증 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특히, 모든 서류들이 스페인어로 작성되므로 현지 사정과 기업설립 절차에 능숙한 전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법적 규제¹⁶⁶⁾

1) 탐사·개발상의 규제

모든 지하자원은 국가 소유이므로 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광업권은 정해진 신청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지만, 가스·석유의 개발은 국영석유공사인 ENAP에서 전담한다. 민간기업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ENAP와 특별운영계약(CEOP)을 맺고 탐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칠레정부가 채취된 자원의 선취매입권을 가진다(국제시세 적용).

또한, 토륨·우라늄 등 원자력 관련 광물자원도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위원회와 계약을 통해서만 채취와 판매가 가능하다.

16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35~37쪽.

국경지대·군사지역 등 국가보안상 중요한 지역의 광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며, 국가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는 광업권이 허가되지 않는다.

2) 환경적 규제

광업이 발달한 칠레 북부지역은 사막지형으로 수자원이 부족하고 기후가 건조하고 서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 오염도가 높다. 따라서 환경 관련법규는 대기오염 관련법규와 수질관리 규정이 주요골자를 이룬다.

칠레 환경법(D. L. 19300)은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개인·법인)이 그 복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업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동법에서 규정한 프로젝트는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와의 접경지대에서 Pascua Lama 금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캐나다의 Barrick Gold 사는 당초 3개월의 빙하를 절단하여 광물을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및 정치권의 반론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였으며 환경청으로부터 빙하를 절단·이동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받아 추가 개발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칠레 정부의 입장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칠레 정부는 법령으로 아황산가스 배출 기준·대기 중 미세먼지 관련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주의·벌금부과(최대 1,000 UTM)·영업정지 또는 폐업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3) 수출절차상의 규제

칠레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국가로 수출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와 그 부산물의 수출에 대하여는 구리위원회 Cochilco에

계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Cochilco를 통하여 구리 수출이 국제시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는 선적 전에 Cochilco에 판매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적 시 세관에서 받은 수출제품 내역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칠레에서 수출되는 구리의 원산지 증명은 유럽지역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그 밖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Cochilco가 관장한다.

(3) 투자유인 법제

1) 원 칙¹⁶⁷⁾

칠레는 기본적으로 내·외국기업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자원개발에 대하여도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외에 지역별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산업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외국인투자법(D.L. 600)¹⁶⁸⁾

① 취 지

D. L. 600(Decreto Ley 600)은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실현된 FDI의 84%가 D. L. 600을 통하여 유입되었다.

16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38쪽.

16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31~32쪽;

www.cinver.cl/english/regulaciones/estatutos_antecedentes.asp

② 장 점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나, D. L. 600을 통해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투자·투자목적 변경·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③ 제 한

D. L. 600을 통해 반입된 자금은 도입 후 1년 동안은 반출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D. L. 600을 통해 투자자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U.S. 500만 달러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투자규모·투자자본형태·투자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하여야 한다. 사전 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정세율 선택권

D. L. 600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no tax change)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7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세율 대신 10년 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중앙은행외국환관리규정(제14장)

칠레 현지화(페소) 형태의 투자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부분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4) 영업이익에 대한 특별세(Royalty II 법)

칠레정부는 2006.01.01. 이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정광 기준 5만 톤 이상 구리생산업체에는 영업이익의 5%, 1만 2천 톤~5만 톤 생산업체에는 0.5~4.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매년 4월 납부).

2. 노동법

(1) 근로조건¹⁶⁹⁾

1) 근로시간

주 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150%이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출퇴근기록부(Libro de asistencia)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노동당국에서 감사를 나올 때 출퇴근기록부가 없으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노무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비치하고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휴 가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한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근속연수가 10년이 되면 이후 매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16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40~42쪽.

휴가사용은 자유이지만, 연속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합의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자녀·배우자 사망 시 7일, 부모 사망이나 유산의 경우 3일 간의 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며, 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보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3) 고용계약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을 2회 이상 연장하거나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종신계약이 된다.

종업원 2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소 85% 이상을 칠레 국적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칠레 연속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칠레 국적자인 외국인의 경우 칠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2) 사회보장제도¹⁷⁰⁾

사회보장세율은 연금(AFP) 12.39%, 의료보험(Isapre) 7%,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여 약 20% 수준으로 소득세와 함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고용주는 실업보험(급여총액의 2.4%), 산재보험(급여총액의 0.95%) 납부의무가 있으나, 연금 및 의료보험에 대하여는 고용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세 법

(1) 조세체계

대표적으로 제1종 소득세(first category tax)로서 법인세가 있고, 추가세(additional tax)와 로열티(royalty)가 있다.

17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42쪽.

(2) 법인세¹⁷¹⁾

칠레에 소재한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17%이다. 납부시기는 매년 4월이며, 매월 잠정세금(Provisional Monthly Payments)을 내다가 4월에 정산하여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거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추가세¹⁷²⁾

칠레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자연인·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며, 세율은 기본 35%(사안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이다. 해외배당소득·과실송금에 대하여 35%,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종 법인소득세 17%가 세액공제된다. 해외상표·특허 이용에는 30%, 도서저작권에는 20%, 해외이자 상환에는 35% 등이 부과된다.

(4) 로열티¹⁷³⁾

칠레 정부는 2006년부터 ‘로열티’라는 일종의 광업세를 신설하였다. 로열티는 광물자원이 칠레 모든 국민의 소유임을 전제로 재상이 불가능한 광물자원 채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로열티로 거둬들인 세금은 기술혁신, R&D, 인력양성 등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12월 이전에 D. L. 600 조항에 의하여 투자하면서 제7항의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선택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율은 구리 판매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과세대상은 연간 구리판매량 12,000TMF 초과 광산업체이다. 표준구리가격은 런던금속시장에서 거래된 구리(Grade A) 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17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42쪽.

17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42쪽.

17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36쪽, 43쪽.

<표 4-5> 구리 판매량별 로열티

연간 구리판매량(MTF 기준)	세 율
12,000MTF 이하	비과세
12,000 ~ 15,000MTF	0.5%
15,000 ~ 20,000MTF	1.0%
20,000 ~ 25,000MTF	1.5%
25,000 ~ 30,000MTF	2.0%
30,000 ~ 35,000MTF	2.5%
35,000 ~ 40,000MTF	3.0%
40,000 ~ 50,000MTF	4.5%
50,000MTF 이상	5.0%

V. 아르헨티나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⁷⁴⁾

1) 회사설립 개요

아르헨티나의 기업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de los Sociedades Comerciales)이다(법률 제19550호). 기업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합자회사(Sociedad de Coman dita; S.C.),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외국기업 투자 시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3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 형태이다. 설립절차 면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쉽고 주주간 의견 조율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쉽다.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인척, 친구

17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0~38쪽.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는 형태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의무도 없으며, 내국기업에 대하여 100% 주식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합작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관리부서는 ① 상장회사의 경우 아르헨티나 증권거래소(Comision Nacional de Valores), ② 비상장회사(개인소유 주식회사)의 경우 아르헨티나 법무 및 인권부 산하 법인청(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 ③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등이 있다.

<표 4-6>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최 소 자본금	- 12,000 페소 (약 4천 달러)	- 없음
설립 절차	- 정관을 아르헨티나 법인청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정관 기재사항 주주 인적사항, 회사명, 주소, 목적, 자본금, 주주구성 등	- 출자자간 계약, 출자조항, 관리 책임, 출자자 변경 등을 기재한 약관 필요 - 절차가 간단하나, 변경시 출자사원의 다수동의(또는 만장일치) 필요 - 자본금 210만 페소(약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하여 설립기간이 짧고 정부규제가 약함
주 주	- 최소 2인, 유한책임 - 국적·거주지 불문 - 법인 또는 개인이 가능하나 주주다수는 아르헨티나 거주	- 최소 2인~ 최대 50인 - 국적·거주지 불문 - 외국회사 또는 개인이 가능하나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이 사	-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 수 제한 없고, 1명도 가능(상장된 경우 3인 이상)	-

2) 법인설립 절차

기업명 중복확인 등 투자를 준비하여 법인 등록후 세무서에 등록한다.

투자준비	- 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지역 선정 등
기업명 중복확인	- 아르헨티나 법인청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업명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명을 예약
법인설립 신청	- ‘법인설립 및 수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법인청에 제출(최초회의록 원본, 공증사본, 설립수수료영수증 등)
공증	- 주주(동업자) 서명 · 공증
법인등록 및 공포	- IGJ내 상업등기소에 기업등록 · 관보(Boletín Oficial)공포
특별장부 구입	- journal book, inventory book은 법정의무
CUIT 취득	- 법인 등록 후 국세청(AFIP)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CUIT) 신청 · 취득
관할세무서 등록	- 제3자가 등록절차를 대행할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이사 · 주주 또는 법정대표자의 서명이 부기되어야 함 -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신분증, CUIT, 정관/사회계약서, 상업주소지 증명서, 회계주소지 원본 및 사본 1부
고용주세번호취득	- 국세청(AFIP)에서 고용주세 번호 취득
외국인 투자등록	- 경제생산부에 외국인 투자등록(의무사항 아님)

3) 지사설립 절차

① 한국 내 절차

i) 모회사의 등기부등본·이사회결의록·정관·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모회사 재무건전성 입증자료를, ii)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iii) 외교통상부의 영사 확인, iv)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친다.

② 아르헨티나 내 절차

i)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확인 후, ii) 공식번역사를 통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고, iii) 아르헨티나 법인청(IGJ)에서 지사설립 신청서류를 제출(설립승인에 3~6개월 소요)하며, iv)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 등록 및 납세번호(CUIT)를 취득한다.

③ 그 밖의 절차로서 은행에서 본사 명의로 미화 및 현지화 당좌계좌(Cuenta Corriente)를 개설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영업할 때 통상 1,000 페소 이상의 비용은 수표발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사설립 등기 및 납세번호(CUIT) 취득 후 한국에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영사면담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지사 대표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입국허가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표가 아닌 주재원은 ‘입국허가서’를 사전에 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법적 규제¹⁷⁵⁾

1) 탐사·개발의 규제

모든 광물자원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탐사 및 개발 전에 주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광업법상 공익성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물 탐사 및

17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9~42쪽.

개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13조 및 제17조).¹⁷⁶⁾

환경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광물자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광물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대책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판매 부과금·로열티 등 세제상 규제

로열티는 “원천”지에서 채광한 광물의 양을 기초로 하며, 경우에 따라 광물 상품화의 최초 장소 및 상태를 기초로 개별 광산별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광물개발에 따른 로열티는 일괄적으로 3%이다(광업투자법 22조).

광업기업단체는 광산업 개발 촉진을 위하여 현재 10%인 수출세를 5%로 인하여 줄 것을 2007년 9월 정부에 요구하였다.

3) 환경적 규제

『광산업에 대한 환경보호법』(법률 제24585호)에 따라 환경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광산개발업체는 광물채취로 인한 환경훼손(물적·인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76) 탐사·채굴·계약 등 모든 행위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은 계약과 관련하여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성은 광물탐사와 직접 관련된 관계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형성한다(제13조). La explotación de las minas, su exploración, concesión y demás actos consiguientes, revisten el carácter de utilidad pública. La utilidad pública se supone en todo lo relativo al espacio comprendido dentro del perímetro de la concesión. La utilidad pública se establece fuera de ese perímetro, probando ante la autoridad minera la utilidad inmediata que resulta a la explotación(Artículo 13); 광물개발은 중단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안전을 위한 피난의 경우와 광업권·근로자의 건강 또는 신변보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Los trabajos de las minas no pueden ser impedidos ni suspendidos, sino cuando así lo exija la seguridad pública, la conservación de las pertenencias y la salud o existencia de los trabajadores(Artículo 17).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속광물에 대한 노천채굴(Cielo abierto)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광물 선별과정에서 시안화물·수은·유황산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광산개발업체는 관할당국에 환경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매 2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당국은 광산개발 단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승인한다. 관계당국은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보호대책을 미이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은 경고·벌금·영업정지·복원명령·허가취소·자격취소 등으로 구분된다.

(3) 투자유인 법제

1) 국가개혁법

아르헨티나는 1989년 8월 국가개혁법(La Ley de Reforma del Estado; 일명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¹⁷⁷⁾

2) 외국인투자법

1993년 9월 개정 외국인투자법(법률 제21,382호)은 외국인 투자대상을 특별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등록의무까지 폐지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상으로도 내국 투자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i) 외국인투자의 내국인 대우 보장, ii) 외국인투자의 사전승인 폐지, iii) 투자대상을 방송, 신문 등 특별법에 규정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 iv) 외환취득, 대외지급 및 투자자본 회수, 과실송금의 자유화 등이다.¹⁷⁸⁾ 또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과 투자보정

177)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8쪽.

178)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9쪽.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3) 금융법과 경쟁법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도 1986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4년 2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1982년 채무위기사 폐쇄하였던 외국은행의 등록재개를 허용하였으며 외국계은행의 지점설치도 완전 자유화하였다(Decree 146). 2001년 3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하여 경쟁법(법률 제25,15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아르헨티나 기업 인수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였다(Decree 304).¹⁷⁹⁾

4)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1977년 제정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 산업진흥법(Industrial Promotion Law), 1989년 9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긴급경제조치법(La Ley de Emergencia Economica), San Juan 주 · San Luis주 등 북부 4개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 법령 1033/91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¹⁸⁰⁾

5) 광산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아르헨티나는 광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일련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⁸¹⁾

- 탐사비용 이중감면 : 비용인정 및 과세소득 공제
- 탐사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 12개월 후 환급
- 광업권 보장 : 타당성 조사 후 30년간 보호, 사후 변경세금 미적용
- 가중감가상각 : 자본재에 대한 조기 감가상각 허용
- 관세감세 :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체세금 면제

179)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8~39쪽.

180)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9쪽.

18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42~43쪽.

- 자본형성 잉여금 미과세 : 증자를 위한 이익잉여금은 면세
- 광업권 자본설정 : 광업권 가치의 50%까지 자본설정 가능
- 자산세 면제 : 광산개발과 직접 관련된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 주정부세 면제 : 인지세 등 주정부세 감면 추진
- 로열티 감축 : 일부 7% 징구중인 로열티를 일괄 3%로 인하 추진
- 수출세 감축 : 현재 10%인 수출세를 5%로 인하 추진
- 금융지원 : 자본재 구입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 외국계 회사의 광업분야 진출 제한이 없고 수출의무 없음

2. 노동법

(1) 근로조건¹⁸²⁾

1) 근로시간

근로조건은 2004년 4월 노동법(법률 제25877호)에 따른다. 고용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신계약’으로 간주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승인된 단체협약으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은 6개월 수습기간을 단체협약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휴 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휴가일은 14일이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 20일마다 1일로 산정한다.

근속연수	5년 미만	5년~10년	10년~20년	20년 초과
휴가일	14일	21일	28일	35일

¹⁸²⁾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45~47쪽.

3) 해 고

근로자는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는 경우 보상금으로 근무연수 1년에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임 금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기준 월 800페소(US\$1 = 3.1페소)이다. 평균임금은 2006년 3/4분기 기준 1,184페소이며, 상여금(aquinaldo)은 연 2회(6월, 12월) 월 임금의 각 50%를 지급한다.

(2) 사회보장제도¹⁸³⁾

사회보장 부담금은 고용주 23%(행정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24% 수준), 근로자 11%이고, 고용주가 근로자 부담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액의 합은 4,800페소가 최고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4,800페소만 지급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보장 부담금 중 의료보험 부담액(9%)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민간 의료보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표 4-6> 사회보장 부담금의 부담액

구 분	고용주 부담액	근로자 부담액	총 액
연금기금	11.7%	8.0%	12.5%
가족수당	4.4%	-	4.4%
실업수당	0.89%	-	0.89%
의료보험	6.0%	3.0%	9.0%
계	23.0%	11.0%	34.0%

18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47쪽.

3. 세 법

(1) 조세체계¹⁸⁴⁾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연방정부), 주세(주정부), 시세(시청)로 구분되며, 납입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관세를 제외한 세금징수 총괄기관은 국세청(AFIP)이며, 직접 징수기관은 관할세무서(Direccion General Impositiva; DGI)이다.

<표 4-7> 아르헨티나 조세 구분

구 분		기본세율	비 고
國 稅	소득세	법인소득세 35.0%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개인소득세 9~35%	
	부가가치세	21.0%	식품 등 10.5%, 통신 등 27.0%
	금융거래세	0.60%	
	재산거래세	1.50%	
	추정최저소득세	1.0%	
	개인재산세	0.5% / 0.75%	700,000페소 기준 차등 적용
州 稅	매출세	1~3%	산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
	인지세	0.5~2.5%	
	부동산세	州마다 다름	
市 稅	영업허가세 등		시 조례에 따라 부과

18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48쪽.

(2) 국세(國稅)¹⁸⁵⁾

1) 법인세

과세대상은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조합·기금·외국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으로서, 세율은 35.0%이다. 과세소득은 법인이 거주자(resident)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아르헨티나 국적자(귀화 외국인 포함)·영주권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법인·회사·조합·재단 등이 포함된다.

2)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모든 개인으로서 세율은 9.0~35.0%(소득에 따라 누진)이다.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

세율은 21.0%(1995년 4월 18%에서 인상)이지만, 통신·가스·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하여 27.0%, 자본재·과일·채소·곡물·육류·신문·잡지·의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의 경우에는 10.5%를 적용한다.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18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49~51쪽.

4) 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

2001년 4월 신설된 세금(법률 제25413호, 제25414호)으로서 세율은 0.6%이고, 급여계좌 및 대출(예금)계좌 금융거래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 악법으로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단기간 내 폐지를 어려울 전망이다.

5) 재산거래세

세율은 1.5%로서,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니다.

6) 추정 최저소득(Impuesto a la ganancia mimima presunta)

세율은 1.0%로서, 관세 특혜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도(Tierra del Fuego)에 위치한 자산, 광업투자에 따른 자산 등 별도로 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7) 개인재산세(Impuesto sobre los Bienes Personales)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거주자는 해외재산을 포함하고,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주식의 경우 거주자는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세율은 0.5%(358,050~700,000 페소)부터 0.75%(700,000 페소 초과)까지이다.

(2) 주세(州稅)¹⁸⁶⁾

1) 매출세(Impuestos sobre los Ingresos Brutos)

세율은 주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어업·광업) 1.0%, 2차 산업(제조업·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유통) 3.0%가 부과된다.

18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1쪽.

2) 인지세(Impuesto a los Sellos)

세율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0.5~2.5%까지 차등 적용된다.

3) 부동산세(Impuesto Inmobiliario)

주 정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3) 그 밖의 세금¹⁸⁷⁾

그 밖의 세금으로서, i)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5.0~35.0%, ii) 수출세는 수출품목에 따라 5.0~25%, iii) 추가부가세는 10%(수입통관 시 부과되며 추후 국세납부에 크레디트로 사용할 수 있다), iv) 내국세는 주류·담배·일부 전자제품에 부과된다(수입품의 경우 내국세율이 20%일 경우 CIF 가격의 39~40% 부과효과).

(4) 광업관련 세금¹⁸⁸⁾

1) 수출세

세율은 10%로서, 광업단체의 요구에 따라 5%로 인하를 추진 중이다.

2) 로열티

법률로 3%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3) 광업세

i) 광업권유지비(Pertenencia)는 연 80페소, ii) 시굴허가비(Permisos de cateos)는 단위당 400페소, iii) 갱도허가비(Socavones)는 연 40페소, iv) 탐사허가비(Exploración)는 연 100s/m당 200페소, v) 항공시찰비(aeronaves)는 1s/Km당 1페소이다.

18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1쪽.

18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2쪽.

제 2 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사례

I. 브라질

1. 개 요

브라질은 1990년대 과감한 문호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 브라질 경제상황 불안, 법률·제도의 미비 등으로 다국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였지만, 2003년 초 플라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개발정책이 강화되고 2003년 말 국제 원자재 난으로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고품질 철광석 확보를 위한 다국적 철강회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에 예전보다 3~4배 많은 석유개발기업이 응하는 등 석유개발 분야에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높고, 따라서 외국기업은 대부분 브라질 내 자원개발기업과 지분분산 참여 방식에 따른 전략적 합작방식을 택하고 있다.¹⁸⁹⁾

2. 에너지원별 투자사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분야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철강·석탄·금·구리·다이아몬드 등이다. 남미대륙에서 활동 중인 주요 광산 개발업체는 약 30여개로 이 중 남미국가는 발레 도 리오 도세(CVRD), Grupo Mexico, Codelco 등 3개 업체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광산개발 전문 외국기업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BHP Billington, Anglo American, ALCAN, Santa Elina Corporation(Yamana), Anglo Gold Ashanti, Rio Tinto 등이 있다. 현재 브라질 광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업은 80~90개

18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21~22쪽.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및 캐나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많으며, 이들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근 남미국가에서도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기업도 브라질 광산업계에 진출하였으며, 2008년부터 바이아 지역에서 니켈을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¹⁹⁰⁾

(1) 철광석 분야

중국의 수강그룹, 일본의 신일본제철, 유럽의 Arcelor, 영국의 Corus, 한국의 포스코 등이 CVRD와 철광석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규모 제철회사 건설을 공동추진 중임. 중국의 Bao Steel은 브라질 최대 광업회사인 CVRD와 공동으로 브라질 북부 마라냥 주에 14억 달러 규모의 슬라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철광석 장기구매도 크게 늘고 있는데, 중국 수강그룹이 CVRD와 2005~2012년 사이 1,130만 톤, 일본 신일본제철이 2014년까지 7천만 톤, 유럽 Arcelor가 5년간 2천만 톤, 영국 Corus가 5년간 1천만 톤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포철의 경우 CVRD와 합작으로 철강원료생산회사인 코브라스코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동국제강은 2007년 11월 CVRD와 고로(용광로) 건설 및 철광석 공급 MOU를 체결하였다.

(2) 석유 분야

다수의 석유 메이저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와 합작투자 형태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총액의 75%는 Petrobras에 집중되어 있으며, 25%는 외자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이 브라질 석유프로젝트개발에 459억 헤알(213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음. 이 사업의 대부분은 Rio de Janeiro주에 투자되며, 그 중 85%가 Campos 광구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 SK에너지는 브라질 유전개발 사업에

19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22~28쪽.

참여하고 있다. 2000년 6월 제2차 국제광구에서는 미국의 Devon 60%, SK에너지 4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제6차 국제광구에서는 Derr-McGee(Anadarko가 인수) 25%, Devon 30%, EnCara 25%, SK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II. 베네수엘라

1. 개 요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으로 매장량이 조사되지 않은 수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적으로 양허권이 양도되어 탐사·개발되고 있는 광물은 금·다이아몬드·석탄 등이다. 국가 전체로 167개의 탐사·채굴 양허권이 양도되었으며, 양허권의 60% 이상이 Bolivar 아마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에너지원별 투자사례¹⁹¹⁾

(1) 보크사이트·알루미나·알루미늄

Bolivar주(동남부지역)는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매장지역으로, 일본은 국영광업공사(CVG)와 합작하여 Venalum사(Showa Denko 등 6개 일본회사가 20%, 주재국이 80% 참여)를 설립하여 생산량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2) 금·다이아몬드

Monarch Resource사는 Camorra광산을 1994년 여름에 개광하여 Canaima 조차지를 시추하여 상당량의 금 매장사실을 확인하였고, Placer Dome사와 CVG도 Kilometro 88 Mining District 소재 6,000 헥타에

191)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12~19쪽.

달하는 Las Cristinas에 대한 탐사 및 시추를 통하여 상당량의 금을 확인하였다. 금광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으로는 미국 Hecla Mining Company, 캐나다 Rusoro Mining Gold Reserve와 Crystallex Internacional Corporation 등이 있으며, Gold Reserve의 경우 전체 금 매장량 1천만 온스, 구리 130만 libra 등의 양허권 허가지역을 채굴하고 있다.

(3) 철광석

베네수엘라는 남미 중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를 이어 철 생산국 제4위이다. 주채국 국영기업인 CVG Ferrominera Orinoco CA에 의해 생산되며, 주 수출대상국은 유럽·미국·일본 등이다. Ferrominera사는 연간 330만 톤의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1994년 9월에 생산을 시작하였고, 일본 Kobe Steel사는 연간 330만 톤의 2호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1997년부터 조업하고 있다.

(4) 석 유

오리노코 지역 유전개발 참여국가 현황을 보면, 러시아(GAZPROM, LUKOIL), 중국(CNPC), 인도 (ONGC), 브라질(PETROBRAS), 스페인(PEPSOL YPF), 포르투갈(GALP ENERGY), 베트남(PETRO-VIETNAM), 말레이시아(PETRONAS), 우루과이 (ANCAP), 아르헨티나(ENARSA), 칠레(ENAP), 에쿠아도르(PETROECUADOR), 쿠바(CUPET), 이란 (PETROPARS), 벨로루시(BELARUSNEFT) 등이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분야 협력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오리노코 유전 개발에 PDVSA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¹⁹²⁾

1) 중 국

1996년 이봉 총리의 베네수엘라 방문 및 2004년 12월 Chavez 대통령의 방중 등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협정 체결 등 다음과 같이 자원

192)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25~32쪽.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오리노코 벨트 유전지대 탐사 프로젝트 참여(중국 CNPC사)
- 양국 국영석유회사 간 합작투자를 통한 석유 및 가스 공동 개발
- 2005년 8월 중국의 총원유수입량의 15~20%(일일 30만 배럴, 연간 500백만 톤 규모)를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중국의 대 베네수엘라 원유 도입 확대 추진

2) 러시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양국은 2001년 경제통상협정 체결 이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리노코 유전지대 탐사 프로젝트(러시아 LUKOIL사 및 GAZPROM사) 및 베네수엘라 정유 시설 및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 브라질

2003년 브라질의 Lula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협력 가속화 (2007. 9, 양국 정상은 매년 분기별 회동에 합의)하고 있다.

-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의 오리노코 벨트 및 베네수엘라 연안 천연가스 개발탐사 프로젝트 참여
- 에너지 분야 역내 협력(Petrosur) 공동 추진
-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3국간 남미가스관 건설 추진
- 브라질산 에탄올 구매 및 폴리염화비닐 공동 생산시설 건설
- 브라질 Pernambuco 지역에 합작 정유공장 건설 합의

4) 스페인

2005년 3월 Zapatero 총리 방문 이후 양국 국영석유회사(PDVSA-Repsol)간 공동 자원개발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PDVSA-Repsol간 MOU를 통해 Repsol사의 베네수엘라 석유개발사업 참여권을 30년 연장하고, 신규 합작회사 수립 방안을 협의

5) 인 도

2005년 양국간 과학기술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농업, 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인도 국영석유회사(ONGC)의 오리노코 벨트 석유·가스사업 진출하였고, 2008년 4월 오리노코 유전지대 원유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약정 체결 등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6) 우루과이

우루과이 국영석유공사(ANCAP)는 오리노코 유전지대의 석유탐사, 채굴, 정제사업 참여를 위해 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ANCAP은 PDVSA와 합작으로 위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며, 지분참여비율은 PDVSA 60%, ANCAP 10%, 기타 참여업체(미정) 30%이다.

7) 아르헨티나

Orinoco 유전지대에서 초중질유 생산을 위한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와 아르헨티나 국영석유회사(ENARSA)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8)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는 오나도(Onado) 유전사업에 대하여, 2006년 5월 석유 자원 국유화 조치에 따라 합작회사(회사명은 Petronado)로 전환하여 공동지분 참여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분비율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CVP) 60%, 아르헨티나계 석유회사 26%(국유화조치 이전 65.01%), 에쿠아도르계 금융회사 8.36%(국유화조치 이전 20.89%), 한국석유공사 5.64%(국유화조치 이전 14.1%)로서 생산원유는 전량 PDVSA에 판매 후 지분에 따라 배분받는다.

Ⅲ. 페 루

1. 개 요

페루는 광업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석유의 경우에는 인접 국가에서 부족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에너지원별 투자사례

(1) 광 물

2006년 기준으로 광물별 투자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³⁾

금속종류	투자기업
Gold	· Minera Yanacocha(277.0) · Minera Barrive Misquichilca(63.0)
Gold & Silver	· Minas Buenaventura S.A.A.(70.0)
Copper	· Sociedad Minera Cerro Verde(479.0) · Southern Peru Copper Corp.(322.0) · Cia Minera Condestable(12.7)
Polimetalic	· Emp. Minera Los Quenuales(57.0) · Cia Minera Antamina(47.3) · Volcan Cia Minera(43.0) · Cia Minera Atacocha(31.3) · Sociedad Minera El Brocal(21.5) · Sociedad Minera Corona(0.5) · Cia Minera Santa Luis S.A.(3.8)
Iron	· Shougang Hierro Peru S.A.A.(70.0)
Tin	· Minsur S.A.(12.0)

* 자료 :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단위 : U.S. \$)

19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17쪽.

(2) 석 유¹⁹⁴⁾

페루의 광구별 참여회사와 지분율, 국가별 투자기업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광구명	투자기업 및 지분율	생산량
1-AB	Pluspetrol(100%)	원유 일일 3만 배럴 (전체 원유생산량 37%)
8	Pluspetro(60%), 석유개발공사(20%), 대우(11.67%), SK에너지(8.33%)	원유 일일 1만7천 배럴 (전체 원유생산량 21%)
X	Petrobras(100%)	원유 1만3천 배럴
Z-2B	Petrotech(100%)	원유 1만3천 배럴
VI/VII	Sapet(100%)	원유 1만3천 배럴
88 (까미세아)	Pluspetro(27.2%), Hunt(25.2%), SK(17.6%), Sonatrach(10%), Repsol(10%), Tecpetrol(10%)	가스 일일 1.3억 ft ³ (전체 가스생산량 60%)

1) 브라질

Lula대통령은 2008년 페루를 3회 방문 계획, 방문 중 양국석유공사(Petrobras, Petroperu) 간 정유소 공동 설립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2) 아르헨티나

Pluspetrol은 페루 총생산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석유·가스 최대 생산업체이다. 1-AB광구, 8광구에서의 생산이 페루 생산의

194)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17~30쪽.

65%를 차지하며, 8광구에는 석유공사, 대우, SK 등 우리 기업도 참여 중이다.

3) 스페인

Repsol-YPF는 39광구 탐사 시추 중이며, La Pampilla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4) 미 국

Occidental Petroleum사는 64광구에서 1억 배럴 상당의 석유 매장량이 2004년에 발견하였고, Doe run Peru사는 세계 최대규모의 납 생산업체인 미국 Doe Run Company의 자회사이다. 그 밖에 Tecpetrol사와 Sapet가 있다.

5) 우리나라

석유·천연가스 분야에 석유공사, SK에너지, 대우 등이 8광구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SK에너지는 Camisea 유전(88광구) 개발사업과 56광구 가스전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IV. 칠 레

1. 개 요

칠레는 구리, 몰리브덴 등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금, 은, 망간, 아연 등도 풍부한 광물의 주요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는 이들 금속 광물에 대한 광구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1974년~2006년 동안 D. L. 제600조에 따라 칠레 광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211억 달러로 대 칠레 총 투자액 635억 달러의 약 33.2%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미국(25.5%), 스페인(21.7%), 캐나다(16.4%), 영국(8.9%), 호주(4.5%) 등의 순이다.¹⁹⁵⁾

19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17~20쪽.

2. 에너지원별 투자사례

세계 구리 매장량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답게 구리광산은 칠레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있는 분야이다. BHP Billiton, Freeport McMoran, Rio Tinto, Anglo American, Mitsubishi 등은 구리광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금·은·철광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영광산의 경우 2007~2013까지의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Codelco가 사업자로서 구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영광산의 경우의 투자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¹⁹⁶⁾

광 물	투자기업
구 리	Anglo American Chile, Antotagasta Minerals, Aur Resources, Barrick, BHP Billiton, Lumina Copper, Minera Centenario Copper, Xstrata
금	Antotagasta Minerals, Barrick, Xstrata
요드, 유산소다, 질산염	Atacama Minerals
철광	Barrick

광물진출에 대하여 국가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⁷⁾

1) 중 국

2005년 중국 Minmetal은 구리자원을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칠레구리공사(CODELCO)와 2006년부터 15년간 매년 55,750 톤의 구리를 공급하도록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5년 구리광산 투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CODELCO가 개발중인 Gaby 구리광산 지분 49%를 입찰을 통하여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19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20~22쪽.

197)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칠레 -, 2008. 7, 38~44쪽.

2) 일 본

일본은 1988년부터 칠레 광업투자 진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동광, 철광, 금광, 니켈광 등 부문에 27억 2백만 미불을 투자하였다.

투자기업	투자광구	투자액
JECO Corporation	Escondida 민영 구리광산	1988년부터 지금까지 355백만 달러(10% 지분)
Sumitomo Metal	Candelaria 민영 구리광산	1992년부터 지금까지 150백만 달러(20% 지분)
Nittesu Mining	Atacama Kozan 민영 구리 및 니켈광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천6백만 달러(60% 지분)
	Nittesu Chile 민영 구리 및 금 광산	2005년 7백만 달러 (100% 지분)
Nippon LP	Pelambres 민영 구리광산	1997년부터 지금까지 438백만 달러(40% 지분)
Mitsui	Collahuasi 민영 구리광산	1998년부터 지금까지 246백만 달러(12% 지분)
Pan Pacific Copper	Regalito 민영 구리광산	2006년 169백만 달러 (100% 지분 소유)
Mitsubishi	Huasco 민영 철광산	1995년 1천1백만 달러 (50% 지분)
Marubeni Corporation	Esperanza 구리, 금 광산	2008년 4월 5억7천만 달러(30% 지분)
	El Tesoro 구리광산	2008년 4월 7억4천만 달러(30% 지분)

3) 그 밖의 주요국가

캐나다는 1974년부터 Collahuasi 구리광산, Lomas Bayas 구리광산 및 금광산 등 개발에 68억1백만 달러, 미국은 1974년부터 Candelaria 구리광산, El Abra 구리광산 등에 54억5천6백만 달러, 영국은 1974년부터

Collahuasi 구리광산, Andes Sur, Mantos Blancos 구리광산 등에 41억1백만 달러, 호주는 1974년부터 Cerro Colorado 구리광산, Escondida 구리광산 등에 26억2천4백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였다. 우리의 경우 포스코 건설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고, 광업분야에서는 1990년 2월 LG상사가 Pelambre 동광산에 참여하였으나 1998년 지분을 5천2백만 달러에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실적이 없다.

V. 아르헨티나

1. 개 요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2002년 디폴트 선언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2004년 증가율이 177.5%나 증가하였다. 유엔 산하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의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05년 이후 3년 연속 중남미 국가 중 외국인 투자유치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 에너지원별 투자사례

투자유치 중 석유·가스·광업(추출활동)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것이 33%를 차지하여 SOC투자 31%를 앞서고 있으며,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누적 투자액 비율도 석유·광업 분야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인 석유·가스의 경우 Repsol-YPF, Pan America, Petrobras, Chevron Texaco, Total Austral, Pluspetrol 등이 주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6월 기준 아르헨티나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13개사인데, 석유탐사 분야에는 (주)골든오일과 페트로 테라가 진출하여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유통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 2 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사례

	(주)골든오일	페트로 테라
진출형태	지 점	지 점
투자형태	단 독	단 독
취급분야	원유·가스 개발, 판매 등 자원협력사업	석유 및 천연가스
종업원수	4명(한국인), 10명(외국인)	1명(한국인), 15명(외국인)

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조사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 주요 부존자원 국가를 중심으로 부존자원의 종류와 생산량, 수출량 등 각국의 현황, 각국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원별 법적 규제,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기업이 진출할 때 필요한 투자 법제와 진출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나 기업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남미 에너지 현황에서의 시사점

(1) 에너지 편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중남미 지역에서 국가별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로서는 구리, 철광석, 석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석유, 천연가스 등 석유관련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중남미 지역 전체가 모든 자원에 대하여 풍부한 부존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부족한 자원을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자국의 에너지 부존 지역을 개발하거나 찾아 헤매는 사례들도 있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진출할 때에는 각국의 에너지 부존 현황과 개발 상황 등에 대하여 광물부문이 풍부한지 석유부문이 풍부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 계측을 철저히 하여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필요

광물이나 석유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하는 이들 중남미 국가들에서조차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바이오에탄올

이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도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자국의 풍부한 식물자원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대체에너지 수입을 위한 부존국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

(1) 정책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중남미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양허권이나 국영기업의 독점권을 통하여, 또는 자국의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로서도 자원 확보 및 자원 투자를 위하여 진출하려는 국가의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갑자기 해당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서 법제가 바뀌어 큰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러한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권의 향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응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도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을 자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각종 공법적 제한을 부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공법적 제한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를 위한 큰 정책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눈높이는 맞추어 이들의

기준을 존중하고 나아가 더 높은 친환경적 기술과 투자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각종 에너지 협력체계에 대응

남미국가연합(UNASUR)과 같은 에너지 부문의 통합을 주요 의제로 하는 조직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면서 각국 간의 공조와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연합체 구성 동향에 대하여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개발 및 투자 법제에서의 시사점

(1) 개발 법제

중남미 각국의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에너지 정책은 관련 국가의 법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헌법을 고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부존자원을 광물자원과 석유자원으로 크게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법령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풍부하면서도 규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을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 자원별로 정확한 법률 규정과 각종 제한 등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법률과 규정에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라는 국가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규정에 이러한 취지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투자 법제

법인이나 지사의 설립 방법 등은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광물자원 분야에 대한 국경지대의 투자 금지와 함께 환경적 규제

등 공법적 규제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노동법제와 각종 세제 및 로열티 부과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연방과 주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자국과 같은 대우를 해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제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업 투자 사례에서의 시사점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자원 확보정책이 특기할 만하다. 투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든 국가별 특징을 고찰하여 탐사, 개발, 생산 등의 상류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 정제, 수송, 판매 등 하류부문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확보와 투자를 위해서는 대상국의 에너지 정책과 문화, 개발법제, 투자법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 자원협력 심포지엄 자료 -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2007. 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 지역경제, 1997. 8.
- 수은해외경제(김영석),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06. 3.
- 수은해외경제(김영석), 중미 통합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06. 3.
- 수은해외경제(양행민), 칠레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시사점, 2006. 5.
- 수은해외경제(최성규), 중남미 경제의 동향 분석과 전망, 2008. 3.
- 수은해외경제, 남미 3개국(페루, 칠레, 아르헨)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2008. 1.
- 수은해외경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향후 전망, 2007. 12.
-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 베네수엘라 -, 2007.
- 에너지경제연구원,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동향, KEEI Issue Paper(No. 13), 2008. 5.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 10.
-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 (제10권 제5호), 2007. 5
-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 2008. 7.
-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페루 -, 2008. 7.
-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칠레 -, 2008. 7.

참 고 문 헌

-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 볼리비아 -, 2008. 7.
-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 한국수출입은행,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8. 1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베네수엘라, 대 미국 석유수출 축소 움직임”, 2004. 4. 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 2006. 6. 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브라질, 광산법 개정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검토 중”, 2008. 12. 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기업, 페루 오일광구 개발권 획득”, 2008. 9.
- KOTRA,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
-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 2007. 12.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2007. 12.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 2007. 12.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 2007. 12.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 2007. 12.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콜롬비아 -, 2007. 12.
-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KOTRA, 주요자원부국의 경제산업 개발수요 및 패키지진출가능 유망프로젝트 조사보고서(지식경제부 정책연구과제), 2008. 12.

KOTRA, 중남미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2005.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자료 - 중남미 최대시장 멕시코 진출 확대방안, 2004. 9.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KOTRA, 중남미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 2004. 5.

LG경제연구원(유기돈), 각국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시사점, 2008. 7.

Argentin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Brazil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8.

Chile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Peru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

Venezuel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

참 고 문 헌

Mexico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

USDA Gain Report, Brazil Bio-Fuels Annual-Biodiesel 2007, 2007. 8. 17

Deutshce Bank Research - The Energy Sector in Latin America, 2007. 9. 7.

M. Rivando - Latin America - Energy Supply, Political Developments, and U.S. Policy Approaches, 2006. 10. 17.

OECD -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Latin America, 2006. 4. 24.

Summary of Oil and Gas Developments in South America, 2006.

Sustainable Energy Policy Initiative Repor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7. 4. 30.

Regulation for the Tax Stability Guarantee and Tax Standards of the Organic Hydrocarbon Law